

가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집



가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법원행정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elp.scourt.go.kr)에서 가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의 본문 내용을 볼 수 있고 수어집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영상 보기를 클릭하면 수어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재판절차에서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판 절차 내에서 의사소통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의 공용어인 수어(手語)에 법률용어의 표준화된 표현 방식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청각장애인이 재판절차에서 수어를 통하여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청각장애인이 재판절차에서 명확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여 재판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각 재판절차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에 대한 표준화된 수어를 제시하는 법률용어 수어집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2020),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2021)을 발간하였고, 올해는 친족관계 및 그와 관련된 재산 등 법률관계, 유언·상속관계 등 가사절차에서 중요한 절차와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가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수어집에서는 가사절차를 절차 유형 및 대상사건에 따라 세분화하여 각 절차별로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수어로 번역하였고, 그 밖에 가사절차에서 알아두면 좋은 제도를 수어로 제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수록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어 표현을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제작하여, 책자에 연결된 동영상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쉽게 수어 표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수어집의 발간을 위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감수를 해 주신 연구진과 감수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어집이 그동안 재판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각장애인 분들과 이들을 조력하는 수어통역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법원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데에 불편을 겪지 않고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법원행정처장 김 상 환

목차

일러두기	8
I. 가사절차에 관한 수어	10
1. 가사절차 개관	10
2. 가사소송절차	15
3. 가사비송절차	18
4. 가사조정절차	21
5. 이행확보 제도	26
II. 친족관계 관련 절차 및 법률용어에 관한 수어	31
1. 주요 법률용어	32
2. 부부관계 관련 절차 및 법률용어	37
1) 혼인	37
2) 이혼	39
3) 혼인·이혼의 무효 및 취소	50
4)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	55
3. 부모와 자 관련 절차 및 법률용어	56
1) 성과 본의 변경	56
2) 인지	57
3) 친자관계 존부 등	61
4) 입양	65
5) 입양의 무효·취소	71
6) 파양	74
7)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	76
8) 친권 및 양육 관련	78
4. 후견 관련 절차 및 법률용어	88



III. 상속관계 등 관련 절차 및 법률용어에 관한 수어	94
1. 상속 관련 절차 및 법률용어	94
1) 상속	94
2) 상속인	96
3) 상속분	99
4)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103
5) 상속회복청구	104
6) 상속의 방식	105
2. 유언 관련 절차 및 법률용어	108
1) 유언	108
2) 유언의 방식	109
3) 유증	112
4) 유언의 검인	115
3. 유류분 관련 절차 및 법률용어	117
1) 유류분	117
2) 유류분반환청구	118
IV. 가사 관련 알아두면 좋은 제도	120
1. 재산명시 · 재산조회제도	120
2. 그 밖의 이행강제방법	122
3. 소송구조 · 절차구조 제도	124
4. 장애인 사법지원	125
용어색인	130

일러두기

1. 『가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은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과 법정통역을 하는 수어통역사의 가사절차 접근성을 높여서 청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발하였습니다.

2. 이 책의 주요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절차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 ① 가사절차 개관 ② 가사소송절차 ③ 가사비용절차
- ④ 가사조정절차 ⑤ 이행확보 제도

2) 친족관계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3가지 제시하였습니다.

- ① 부부관계 관련 절차 ② 부모와 자 관련 절차 ③ 후견 관련 절차

3) 상속관계 등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3가지 제시하였습니다.

- ① 상속 관련 절차 ② 유언 관련 절차 ③ 유류분 관련 절차

4) 가사 관련 알아두면 좋은 제도를 다음과 같이 5가지 제시하였습니다.

- ①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 ② 담보제공명령 ③ 일시금 지급 명령
- ④ 소송구조·절차구조 제도 ⑤ 장애인 사법지원

3. 수어 표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어는 [] 기호 안에 그 의미를 한글로 기록하는 기존의 수어사전 표기 방식을 따랐으나, 보기가 혼잡하여 [한 문장]으로 넣습니다.

2) 한글 표기는 기존의 수어사전 표제어를 사용하되, 표제어가 의미와 맞지 않아 의미 이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의미에 맞는 말을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로 해당 수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 3) 한국어 하나에 대응하는 수어가 여럿일 경우, 먼저 의미를 적고 괄호 안에 수어소를 설명합니다. 수어소를 설명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된 방식을 따라 수형과 수향을 먼저 설명하고 수위와 수동을 설명하되, 최대한 글자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 4) 지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명칭을 먼저 쓰고 ‘(지문자)’표시를 붙입니다.
- 5) 가장 빈번히 쓰이는 의문형 비수지신호는 ‘의문형’으로 표현하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설명을 붙입니다.
- 6) 수어는 시간 순으로 나열되는 음성언어와 달리 한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에 왼손과 오른손이 동시에 다른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 이 같은 경우에 기존의 수어사전에서 ‘구성 성분이 하나로 합성된 복합어’에 사용했던 ‘[/]’를 사용합니다. 비우세손이 하나의 수어를 유지한 채 우세손의 수어만 바뀔 때는 ‘[/ (+ + +)]’로 표기하여 수어사전에서 두 종류의 합성 방식을 같이 사용할 때 표기했던 ‘[/ +]’와는 ‘()’로 구분합니다.
- 7) 수형이 다른 분류사의 경우, 기존 수어사전의 표기와 같이 ‘[/]’로 표기합니다.
- 8) 두 수어를 반드시 붙여 써야 할 때는 ‘[+]’로 하나의 수어 표현 표기인 ‘[]’ 안에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 9) 문장의 나눔은 문단으로 구분하고, 문장 내에서 휴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쉬고)로 표기합니다.

I

가사절차에 관한 수어



[가정]



[재판]



[절차]

1. 가사절차 개관



가사절차 설명

가사절차는 부부, 가족 그 밖에 친족 사이의 신분관계 및 그와 관련된 재산,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을 다루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정 + 재판 + 절차 + 의미 뭐]

[부부 + 가족 + 또 + 가깝다 + 친척 + 사이 + 안에 + 관련 + 재산 + 권리 + 잡동사니 + 법 + 관계 + 사건 + 절차]



영상보기
(I-1-1)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이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성격에 따라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가사신청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정 + 법원 + 만 + 가정 + 사건 + 전문 + 담당]

[갈등 + 사건 + 성격 + 맞게 + 절차 4개]

[가정 + 재판 + 소송 + 다음 + 참여 + 없다 + 가정 + 재판 + 다음 + 가정 + 조정 + 합의 + 절차 + 다음
+ 가정 + 재판 + 신청 + 진행]

■ 가사소송사건은 가류, 나류, 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마류로 나누어집니다.

[가정 + 재판 + 소송 + 그것]

[(지화)가류 + (지화)나류 + (지화)다류 + (숫자)3 + 참여 + 없다 + 가정 + 재판 + (지화)라류 +
(지화)마류 + (숫자)2 + 나누다]

■ 가사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절차에 따릅니다.

[가정 + 재판 + 절차 + 대부분 + 개인 + 사건 + 절차 + 같다]

■ 따라서 합의부, 단독판사, 원고, 피고, 소장, 준비서면, 판결 등 민사절차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용어는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 + 장 + 셋 + 재판 + 장 + 하나만 + 소송 + 사람 + 불리다 + 사람 + 재판 + 신청 + 네모 + 준비 +
서류 + 재판 + 결정 + 여러 가지]

[개인 + 사건 + 절차 + 사용 + 가능 + 단어]

[개인 + 사건 + 절차 + 법 + 단어 + 수어 + 책 + 확인 + 가능]

■ 가사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기일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가정 + 재판 + 절차]

[변호사 + 있다 + 불구하고]

[본인 + 출석 + 꼭 + 필요]

[미성년자 + 때 + 부모 + 법 + 대신 + 사람 + 대신 + 출석 + 가능]

■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본인 대신 출석할 수 있는 민사절차와 다릅니다.

[변호사 + 소송 + 담당 + 사람 + 본인 + 대신 + 출석 + 할 수 있다]

[그것 + 사람 + 사건 + 절차 + 오직 + 할 수 있다]

[가정 + 재판 + 불기]

나류,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화)나 류 다 류 + 가정 + 재판 + (지화)마 류 + 참여 + 없다+ 가정 + 재판 + 대해서]

[소송 + 신청 + 심리 + 재판 + 신청 + 싶다 + 사람]

[먼저 + 조정 + 합의 + 절차 + 신청 + 필수]

이들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이것 + 대한 + 조정 + 합의 + 절차 + 신청 + 없다]

[바로 + 소송 + 신청 + 또 + 심리 + 재판 + 신청 + 때]

[판사 + 먼저 + 조정 + 합의 + 절차 + 말기다 + 필수]

[이것 + 이름 + 조정 + 합의 + 절차 + 먼저]

▶ 관련용어

가정법원

가사 · 소년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합니다.



영상보기
(I-1-2)

[가정 + 법원]



I 가사소송

신분관계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

[가정 + 재판 + 소송 + 공식 + 선언]



영상보기
(I-1-3)



I 가사비송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후견적 또는 감독적 지위에서 재량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

[참여 + 없다 + 가정 + 재판]



영상보기
(I-1-4)





가사조정

가정법원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원만한 의사합치에 이르도록 조정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가정 + 조정 + 합의 + 절차]



영상보기
(I-1-5)



2. 가사소송절차



가사절차 설명

가사소송은 신분관계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정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립하는 당사자가 존재하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영상보기
(I-2-1)

[가정 + 소송 + 이것]

[사람 + 관계 + 또 + 재산 + 관련 + 분쟁 + 가운데]

[가정 + 법원 + 권한 + 관련 + 사건 + 원인 + 사람 + 사이 + 문제 + 소송 + 절차 + 해결 + 재판]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는 혼인의 무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사건 등이 있습니다.

[첫째 + (지화)가류 + 소송 + 내용]

[결혼 + (지화)무 + 부모 + 자녀 + 핏줄 + 확인 + 여러가지 + 있다]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는 재판상 이혼, 친생부인, 인지청구 사건 등이 있습니다.

[둘째 + (지화)나류 + 소송 + 내용]

[선언 + 이혼 + 자녀 + 나 + 핏줄 + 다르다 + 소송 + 부모 + 자식 + 인정 + 신청 + 여러가지 + 있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는 각종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사건 등이 있습니다.

[셋째 + (지화)다류 + 소송 + 내용]

[가정 + 관련 + 피해 + 보상 + 또 + 원래대로 돌려놓다 + 신청 + 여러가지 + 있다]

소 제기의 방식과 절차, 증거조사절차 등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 + 방식 + 절차 + 증거 + 조사 + 개인 + 재판 + 절차]

[대부분 +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 참고]

▶ 다만 통상적인 민사소송의 소장과 다르게, 가사소송의 소장에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도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 개인 + 재판 + 다르다]

[가정 + 재판 + 소송 + 서류 + 이것]

[본인 + 주민등록번호 + 기본증명서 + 보다 + 첫번째 + 그것만 + 쓰다]

▶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지화)나류 + (지화)다류 + 가정 + 재판 + 때]

[소송 + 그 전 + 조정 + 합의 + 절차 + 먼저 + 진행 + 필수]

▶ 가사소송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정 + 재판 + 시비 + 날(날짜) + 본인 + 직접 + 참여 + 필요 + 법]

▶ 출석의무를 위반한 때는 가정법원 등의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 참여 + 안하다 + 위반 + 때]

[판사 + 결정 + (지숫자)50 + 만원 + 이하 + 게으르다 + 돈 + 통보 + 또 + 사람 + 잡다 + 명령]

▶ 가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절차는 대체로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절차와 유사합니다.

[가정 + 재판 + 증거 + 조사 + 절차]

[개인 + 재판 + 증거 + 조사 + 절차 + 대부분 + 같다]

▶ 다만 가정법원은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단 + 판사 + (지화)가류 + (지화)나류 + 재판 + 때]

[직접 + 본인 + 아니면 + 법 + 대신 + 사람 + 추궁하다 + 가능]

▶ 가사소송사건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비밀보장이나 명예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 + 문제 + 재판 + 결과 + 공개 + 원칙]

[하지만 + 개인 + 비밀 + 명예 + 보호 + 필요 + 원하다 + 공개 + 아니다]

■ 가사소송은 법원의 판결(종국판결)로 종결됩니다.

[가정 + 재판 + 끝 + 방법 + 뭐 + 판사 + 판결]

■ 다만 민사소송과 다르게 피고의 청구 인낙, 원고의 청구 포기나 화해가 제한됩니다.

[단 + 가정 + 재판 + 안에서 + 피고 + 내용 + 맞다 + 인정 + 또 + 소송 + 사람 + 스스로 + 포기 + 또 + 서로 + 풀다 + 한계 + 있다]

3. 가사비송절차

▶ 가사절차 설명

가사비송절차는 가정법원이 후견적 또는 감독적 입장에서 허가 또는 처분을 하거나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을 가지는 재판절차입니다.

[참여 + 없다 + 가정 + 재판 + 판사 + 뒤 + 살피다 + 돕다 + 또 + 관리 + 입장 + 결정 + 대한 + 넓은 + 재량 + 가진다]



영상보기
(I-3-1)

상대방이 없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는 실종선고와 그 취소 사건, 성과 본에 관한 사건, 입양에 관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닛째 + 상대방 + 없다 + (지화)라류 + 내용]

[사람 + 실종 + 선언 + 또 + 이것 + 관련 + 취소 + 사건]

[또 + (오른손)이름 + (왼손)3 + (오른손)2지를 + (왼손)2지에 가리키다 + 이름 + 뿌리 + 관련 + 사건]

[또 + 자녀 +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 + 이동 + 관련 + 사건 + 여러 가지]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는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건(양육자의 지정 또는 변경 등),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 상대방 + 있다 + (지화)마류 + 내용]

[부모 + 권리 + 또 + 키우다 + 사람 + 정하다 + 바꾸다 + 여러 가지]

[또 + 물려주다 + 재산 + 나누다 + 관련 + 여러 가지]

가사비송절차는 당사자의 심판청구에 따라 절차가 개시됩니다.

[당사자 + 재판 + 신청 + ~따라 + 참여 + 없다 + 가정 + 재판 + 시작]

심판청구서에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명을 적어야 합니다.

[청구 + 서류]

[본인 + (지화)기본증명서 + 보다 + 첫번째 + 집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목록 + 적다 + 필요]

[법 + 대신 + 사람 + 청구 + 때 + 법 + 대신 + 사람 + 주소 + 성명 + 필요]

[신청 + 목적 + 원인 + 또 + 신청 + 연월일 + 가정법원명 + 적다 + 필요]

가사비송사건 가운데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친권자의 지정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건,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부양에 관한 사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여 + 없다 + 가정 + 재판 + ~안에]

[부부 + 관련 + 사건 + (취고) + 부모 + 권리 + 지정 + 자녀 + 키우다 + 관련 + 사건 + (취고) + 부모 + 권리 + 상실 + 관련 + 사건 + (취고) + 키우다 + 책임 + 관련 + 사건 + (취고) + 재산 + 나누다 + 관련]

[심리 + 재판 + 신청 + 때]

[먼저 + 조정 + 합의 + 절차 + 신청 + 필수]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본인 + 사람 + 조정 + 합의 + 절차 + 신청 + 안하다]

[판사 + 재량껏 + 조정 + 합의 + 절차 + 맡기다]

가사비송사건은 변론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당사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인의 심문을 통해 심리가 진행됩니다.

[참여 + 없다 + 가정 + 재판]

[이의, 반박 + 필요 없다 + 당사자 + 포함 + 관계 + 사람 + 연결 + 심리 + 진행]

가사비송사건의 심문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가정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참여 + 없다 + 가정 + 재판 + 재판 + 공개 + 없다 + 원칙]

[그러나 + 판사 + 승인 + 사람 + 있다 + 면 + 그 사람 + 만 + 오다 + 구경 + 가능]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으로 종국재판을 하게 되고, 종국심판의 고지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참여 + 없다 + 가정 + 재판 + 끝 + 뭐? + 판사 + 신청 + 대하여 + 최종 + 결정 + 그것 + 고지 + 끝]

■ 가사비송사건에서는 통상의 민사소송과 달리 원고의 청구 취하, 포기,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 참여 + 없다 + 가정 + 재판]

[고소하다 + 사람 + 신청 + 취소 + 포기 + 재판 + 이것(재판 가리키면서) + 100% + 재판 + 합의 + 해결 + 못하다]

[민사소송 + 다르다]

4. 가사조정절차



가사절차 설명

가사조정절차는 가정법원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원만한 의사합치에 이르도록 조정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가정 + 조정 + 합의 + 절차]

[판사 + 분쟁, 이의, 반박 + 관계자 + 사이에 + 참여 + 해결 + 노력 + 조정 + 절차]



영상보기
(I-4-1)

가정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가사소송절차 및 가사비송절차와 다릅니다.

[판사 + 재판 + 해결 + 가정 + 재판 + 소송 + 공식 + 선언 + 참여 + 없다 + 가정 + 재판 + 다르다]

가사조정사건은 가정법원에 설치된 가사조정위원회 또는 가사조정담당판사가 담당하기도 합니다.

[가정 + 조정 + 합의 + 절차 + 문제]

[가정 + 법원 + 안에서 + 설치하다 + 가정 + 조정위원회]

[아니면 + 판사 + 조정 + 담당 + 처리하다]

가사조정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의 신청으로 가사조정절차가 시작됩니다.

[가정 + 조정 + 절차 + 자격 + 있다 + 신청 + 시작]

가사조정신청서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신청의 취지와 원인, 신청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가사 + 조정 + 신청 + 종이]

[본인 + (지화)기본증명서 + 첫 번째 + 주소 + 이름 + 생년월일]

[법 + 대신 + 사람 + 청구 + 때 + 법 + 대신 + 사람 + 주소 + 이름]

[작성목적 + 이유 + 신청당일날짜 + 담당법원이름 + 본인 + 아니면 + 법 + 대신 + 사람 + 이름 + 쓰다 + 도장찍다 + 혹은 + 이름 + 쓰다 + 서명]

가사조정 대상인 가사사건에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가정 + 조정 + 합의 + 절차]

[가사 + 사건 + 그것 + 조정 + 합의 + 절차 + 먼저 + 진행 + 필수]

가사조정 대상인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가사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했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그 사건을 가사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지화)나류 + (지화)다류 + 가정 + 재판 + 소송 + 공식 + 선언 + 또 + (지화)마류 + 참여 + 없다 + 가정 + 재판 + 대해서]

[본인 + 조정 + 신청 + 아직 + 소송 + 제기 + 심리재판 + 신청 + 때]

[판사 + 재량껏 + 조정 + 합의 + 절차 + 필요 + 가능하다]

다만, 가정법원이 조정성립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 판사 + 판단 + 조정 + 합의 + 불가 + 가능성 + 인정 + 때]

[재판 + 진행 + 가능하다]

가사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조정 + 합의 + 절차 + 열리다 + 날짜 + 본인 + 참여 + 원칙]

가사조정절차는 공개함이 원칙이나, 조정장 등의 결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개 + 원칙 + 하지만 + 위원장 + 비공개 + 결정 + 진행 + 가능]

절차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장 등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 때 + 위원장 + 사람 + 구경 + 허락]

가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합니다.

[가정 + 조정 + 합의 + 절차 + 이것은]

[상호 + 합의 + 내용 + 적다 + 인정하다 + 그대로 + 공문서 + 만들다 + 끝]

■ 합의를 조서에 적은 후에는 임의로 철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작성 + 완료 + 후 + 취소 + 불가]

■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 이것 + 재판 + 합의 + 해결 + 같다 + 효과 + 있다]

■ 조정기관은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 기관 + 에서 + 사건 + 관계자 + 사이 + 합의 + 어긋나다 + 때]

[사건 + 평등하다 + 해결 + 위해]

[재량껏 + 권리 + 조정 + 대신하다 + 결정 + 할 수 있다]

■ 당사자가 결정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됩니다.

[본인 + 결정 + 종이 + 받다 + 날로부터 + 2주 + 안에 + 이의, 반론 + 없다]

[그대로 + 최종 + 결정]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 + 조정내용 + 대신하다 + 최종 + 결정]

[재판 + 합의 + 해결 + 같다 + 효과 + 발생]

■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절차는 종결되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의 제기 ·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은 소송 · 심판절차로 이행됩니다.

[합의 + 안 되다(여러 번 강조) + 조정 + 합의 + 절차 + 해산]

[조정 + 신청 + 곧 + 재판 + 신청 + 마찬가지로 + 바로 + 재판 + 진행]

▶ 관련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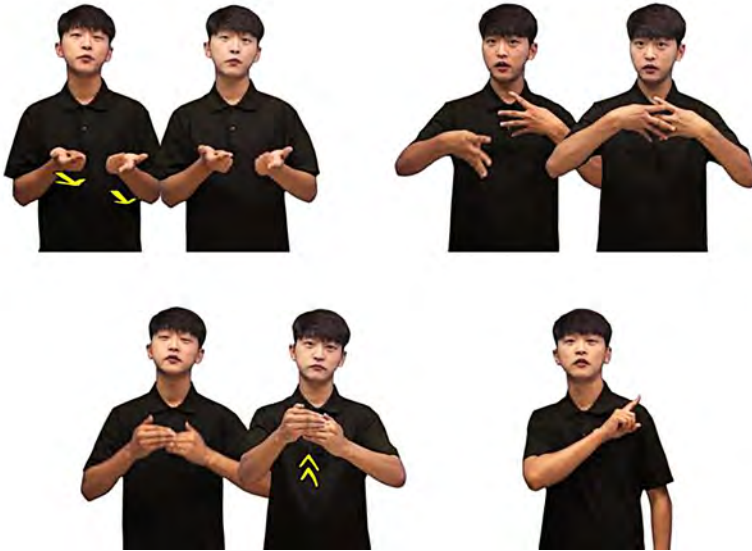
▶ 조정 전치주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상보기
(I-4-2)

[조정 + 합의 + 절차 + 먼저]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경우에 분쟁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가정법원이 조정안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보내는 결정.



영상보기
(I-4-3)

[조정 + 내용 + 임의(결정) + 작성 + 최종 + 결정 + 보내다]



5. 이행확보 제도

▶ 가사절차 설명 : 이행확보 제도

이행확보 제도는 2가지가 있습니다.

[행동 + 압수 + 법 + 방식 + (지숫자)2 + 있다]



영상보기
(I-5-1)

첫째는 재판종료 전에 미리 신분에 관한 의무나 신분을 임시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첫째 + 재판 + 끝 + 전 + 임시로 + 신분 + 또 + 그것 + 대한 + 의무 + 결정]

예를 들면, 가압류 · 가처분과 사전처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다 + 빨간 딱지 + (양손 2 모양으로 대각선)붙다 + 가두다 + 임시 + 명령 + 사전 + 결정 + 있다]

두 번째는 재판종료 후에 그 재판에 따라 정해진 의무나 신분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이 있습니다.

[둘째 + 재판 + 종료 + 후에 + 법 + 명령 + 규칙 + 예를 들다 + 키우다 + 돈 + 직접 + 지급 + 명령 + 실천 + 명령 + 여러 가지 + 있다]

▶ 가사절차 설명 : 사전처분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에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나 조정 전에 미리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에 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판사 + 역할 + 가정 + 사건 + 안에서 + 재량껏 + 권리 + 아니면 + 본인 + 신청 + 의하여]

[재판 + 선언 + 조정 + 전 + 나이 아직 + 자식 남녀 + 키우다 + 여러 가지]

[적당하다 + 이것에 맞다(양쪽 손날 마주치는) + 인정 + 결정 + 가능]

[그것 + 미리 + 결정]



영상보기
(I-5-2)

■ 사전처분제도는 가사비송사건 뿐 아니라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조정사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 결정 + 법 + 방식]

[참여 + 없다 + 가정 + 재판 + 오직 + 아니다 + 가정 + 재판 + 소송 + 공식 + 선언 + 또 + 가정 + 조정 + 합의 + 절차 +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법원은

[예를 들다 + 판사]

■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을 그 대행자로 선임한다.”

[그것 + 사건 + 심리 + 재판 + 확정 + 선언]

[상대방 + 나이 아직 + 자녀 + 대한 + 부모 + 권리 + 활동 + 금지]

[다른 + 사람 + 대신 + 맡기다]

■ 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일정 금액을 일정한 날에 지급하며, 피신청인은 일정한 경우에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 신청 + 사람 + 부르다 + 사람 + 사이 + 소송 + 절차 + 종료 + 까지]

[나이 아직 + 자녀 + 임시 + 기르다 + 사람 + 특정 + 사람 + 결정]

[또 + 신청 + 사람 +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몸을 움직이기/방향 자유) + 부르다 + 사람 + 키우다 + 돈 + 같다(여러번) + 돈 + 같다(여러번) + 날(날짜) + 주다(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방향 자유)]

[또 + 신청 + 받다 + 사람 + 필요하다 + 때 + 나이 아직 + 자녀 + 만나다 + 연락하다 + 권리 + 가능하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합하다 + 이유 + 없다 + 사전 + 해결 + 위반 + 사람]

[(지숫자)1000 + 만 + 이하 + 게으르다 + 돈 + 내다 + 결정 + 통지 + 가능하다]



가사절차 설명 : 가압류, 가처분

가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이란 가사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 등이 성립되기 전에 그 본안사건에 관한 재판 또는 조정에 의하여 형성될 신분법상의 일정한 의무 내지 지위를 미리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영상보기
(I-5-3)

[가정 + 소송법 + 안에 + 빨강 + 딱지를 붙이는 동작 2번 + 임시 + 두다(오른손만) + 의문형]

[가정 + 사건 + 대해 + 재판 + 확정 + 조정 + 여러가지 + 성립하다]

[미리 + 정식 + 소송 + 관하다 + 재판 + 아니면 + 조정 + 의하다 + 자연스럽게 + (지화)신분법 + 정하다 + 의무]

[미리 + 보호 + 유지 + 절차 + 말하다]

가압류·가처분 용어의 의미는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빨강 + 딱지를 붙이는 동작 2번 + 임시 + 두다(오른손만) + 단어 + 의미]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 참고 + 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인정되지만,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빨강 + 딱지를 붙이는 동작 2번 + 임시 + 두다(오른손만)]

[가정 + 재판 + 소송 + 공식 + 선언 + 아니면 + (지화)마류 + 참여 + 없다 + 가정 + 재판 + 사건 + 가능]

[하지만 + (지화)라류 + 가정 + 재판 + 요청 + 불가]

예를 들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다]

[이혼 + 따르다 + 재산 + 나누다 + 신청 + 또 + 피해 + 돈 받다 + 신청 + 보호 + 유지 + 위해]

[남편, 아내 + 재산 + 대해서]

[미리 + 빨강 + 딱지를 붙이는 동작 2번 + 신청 + 가능]

가압류·가처분은 본안사건,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빨강 + 딱지를 붙이는 동작 2번 + 임시 + 두다(오른손만)]

[정식 + 소송 + 빨강 + 딱지를 붙이는 동작 2번 + 물건 + 있다 + 곳 + 다툼 + 있는 + 곳]

[관리 + 책임 + 가정 + 법원 + 신청 + 할 수 있다]

▶ 그런데 가압류·가처분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사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는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 빨강 + 딱지를 붙이는 동작 2번 + 임시 + 두다(오른손만) + 통지 + 피해 + 발생 + 할 수 있다]

[개인 + 재판 + 절차 + 마찬가지로]

[판사 + 빨강 + 딱지를 붙이는 동작 2번 + 임시 + 두다(오른손만) + 신청 + 사람 + 돈 + 맡기다 + 명령 + 가능하다]

▶ 가사절차 설명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 채무자)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보기
(I-5-4)

[나이 아직 + 자녀 + 대해서 + 키우다 + 돈 + 정기적 + 주다 + 담당 + 사람 + 괄호() + 키우다 + 돈 + 담당]

[(지숫자)2회 + 이상 + 키우다 + 돈 + 주다 + 아직/여기다 + 때]

[키우다 + 돈 + 받을 + 사람 + 판사 + 키우다 + 돈 + 재량껏 + 주다 + 시키다 + 신청 +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판사 + 회사대표 + 명령 + 키우다 + 돈 주다 + 사람 + 급여 + 빼다 + 키우다 + 사람 + 재량껏 + 주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키우다 + 돈 + 재량껏 + 주다 + 명령 + 위반]

[계으르다 + 돈 + 우편+ 날아오다]



가사절차 설명 : 이행명령

■ 금전(양육비 등)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 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명령이라고 합니다.



영상보기
(1-5-5)

[돈 + 주다 + 책임 + 아기 + 이끌다 + 책임 + 또 + 자녀 + 만나다 + 협의 + 허락 + 책임 + 실천 + 필요한 + 사람]

[이유 + 없다 + 책임 + 위반 + 때]

[당사자 + 신청 + 있다 + 판사 + 정한 + 기간 + 안에 + 게으르다 + 돈 + 실천 + 명령 + 할 수 있다]

[그것 + 실천 + 명령 + 부르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합하다 + 없다 + 실천 + 명령 + 위반 + 사람]

[(지숫자)1000 + 만 + 이하 + 게으르다 + 돈 + 내다 + 통지(위반한 사람을 가르키며) + 할 수 있다]

■ 또한 이행명령에 의하여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정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의무자에게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 + 실천 + 명령 + 자연스럽게 + 키우다 + 돈 + 정기적 + 주다 + 명령 + 받다 + 키우다 + 돈 + 책임 + 사람]

[부합하다 + 없다 + (지숫자)3회 + 이상 + 정기적 + 돈 + 주다 + 어기다 + 때]

[아기 + 인도/이끌다 + 명령 + 받다 + 사람 + 게으르다 + 돈 + 통지 + 또 + (지숫자)30 + (숫자 30을 오른쪽 뺄에 대고 앞으로 내밀다) + 안에 + 부합하다 + 없다 + 어기다 + 때 + 여러 가지]

[권리 + 사람 + 신청 + 따라]

[판사 + (지숫자)30 + (숫자 30을 오른쪽 뺄에 대고 앞으로 내밀다) + 안에 + 임시 + 잡아오다 + 가두다 + 명령 + 할 수 있다]

II

친족관계 관련 절차 및 법률용어에 관한 수어



[나]



[이어지다]



[친척]



[8촌]



[결혼]



[이어지다]



[4촌]

1. 주요 법률용어

▶ 관련용어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 이외에 한 집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가족]



영상보기
(II-1-1)

친족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혈족 및 인척.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나 + 이어지다 + 친척 + 8촌 + 결혼 + 이어지다 + 4촌]



영상보기
(II-1-2)

혈족

본인과 혈연관계 또는 양자관계에 있는 사람. 출생으로 발생하는 자연혈족과 입양으로 발생하는 양부모관계인 법정혈족이 있습니다.

[종류 + 두가지 + 첫 번째 + 나 + 태어나다 + 맞다 + 핏줄 + 두 번째 + 나 + 입양 + 법 + 등록 + 핏줄 + 인정]



영상보기
(II-1-3)



인척

배우자 이외에 혼인에 의하여 친족이 되는 사람.

혈족의 배우자(사위, 형제의 처, 자매의 남편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처제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형제의 처 등)를 말합니다.

[결혼 + 끝 + 남편 + 가족 + 친척 + 든지 + 아내 + 가족 + 친척]



영상보기
(II-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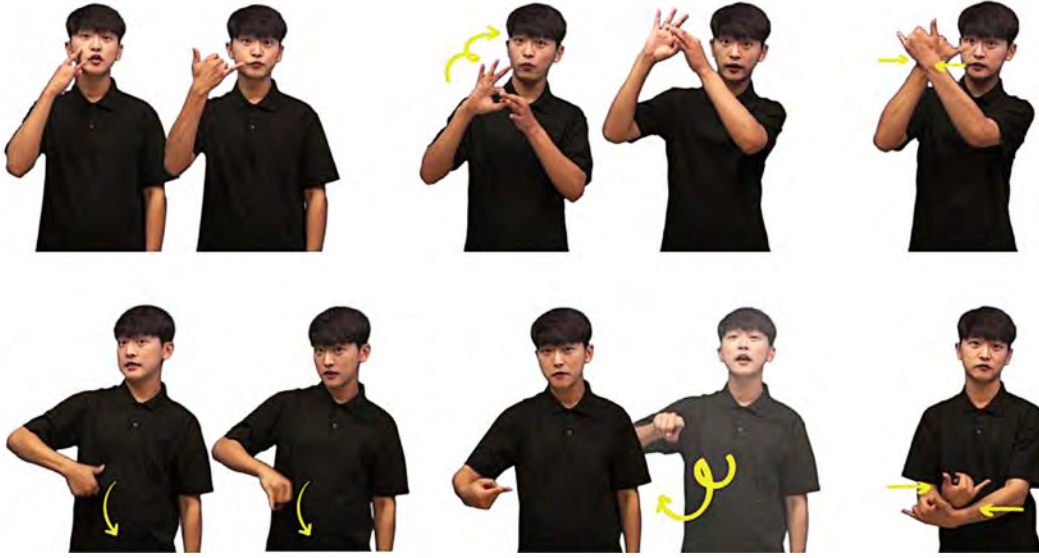
직계혈족

혈족 중 본인과 위로부터 아래로 수직으로 연결된 혈족.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뉩니다.

[부모 + 위 + 친척 + 자녀 + 다음(반복) + 친척]



영상보기
(II-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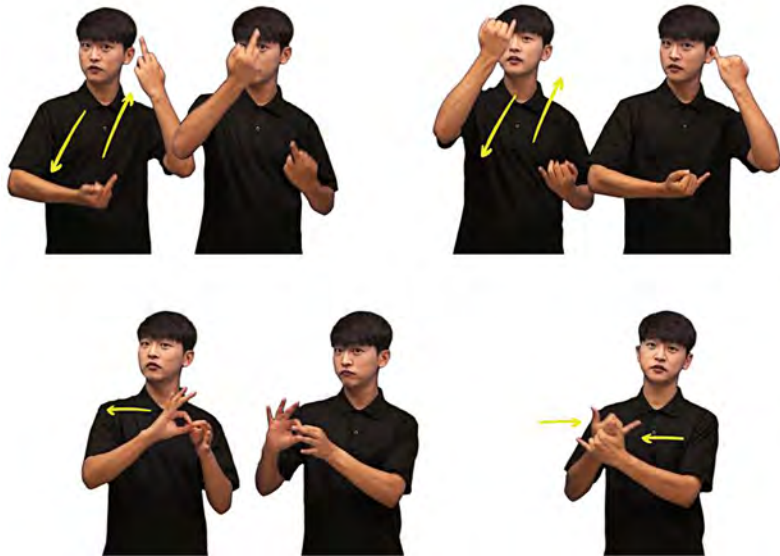
방계혈족

공동의 시조에 의하여 연결된 혈족 중 직계혈족이 아닌 친족.

[형제자매 + 이어지다 + 친척]



영상보기
(II-1-6)



직계존속

혈족 중 자기로부터 수직으로 연결된 윗 세대에 있는 사람.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모 + 위 + 친척]



영상보기
(II-1-7)



직계비속

혈족 중 자기로부터 수직으로 연결된 아랫 세대에 있는 사람.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녀 + 다음(반복) + 친척]



영상보기
(II-1-8)



2. 부부관계 관련 절차 및 법률용어

1) 혼인

▶ 관련용어

Ⅰ 혼인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간의 결합. 법률혼을 의미합니다.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의 합치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여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결혼]



영상보기
(Ⅱ-2-1-1)

Ⅱ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관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 + 등록 + 아직 + 부부 + 생활 + 실제]



영상보기
(Ⅱ-2-1-2)



일상가사대리권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일에 대해 서로 대리할 수 있는 권리.
 부부는 법률혼, 사실혼 불문하고 서로에 대해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며,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해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영상보기
 (II-2-1-3)

[부부 + 함께 + 생활 + 목적 + 가사 + 일 + 서로 + 말다 + 권리]



2) 이혼



가사절차 설명 : 협의이혼

이혼(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 + 방법 + 두 개]

[1번 + 합의 + 2번 + 재판 + 신청]



영상보기
(II-2-2-1)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이혼 + 생각 + 동의(100모양) + 법원 + 둘이 + 가다 + 확인 + 합의 + 이혼]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 이혼 + 원하다 + 나 + 동의 + 필요]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이혼 + 신청 + 서류 + 주다 + 생각 + 여전하다 + 꼭]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 + 합의 + 이혼 + 원하다]

[제일 + 가정 + 법원 + 둘이 가다 + 이혼 + 생각 + 응답]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부부 + 가정 + 법원 + 둘이가다]

[이혼 + 생각 + 응답 + 후 + 이혼 + 교육 + 순증]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 + 이혼 + 내용 + 설명 + 끝 + 후]

[자녀+ 있다(의문형) + 3개월 + 자녀 + 없다 + 1개월 + 이혼 + 고민 + 기간 + 지나다]

[진짜 + 이혼 + 확인]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부부 모두가 의무적으로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 하고 부부 모두가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나이 아직 + 자녀 + 있다 + 교육 + 참여 + 꼭 + (쉬고) + 교육 + 완료 + 이혼 + 3개월 + 고민 + 기간]

■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를 제출합니다.

[키우다 + 필요 + 나이 아직 + 자녀(임신+포함) + 있다]

[부모 + 권리 + 키우다 + 합의 + 종이 + 제출]

■ 만약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 합의 + 못하다 + 때]

[판사 + 심리 + 재판 + 직인 서류 + 제출 + 필요]

■ 이때 가정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데 양육비부담조서는 이혼 후 양육비 이행에 관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사 + 키우다 + 돈 + 책임 + 조서 + 작성 + 필요]

[키우다 + 돈 + 책임 + 조서 + 뭐 + 이혼 + 후 + 키우다 + 돈 + 주다 + 공(公)증거 + 되다]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로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을 하거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 키우다 + 돈 + 어기다]

[키우다 + 돈 + 책임 + 조서 + 바로 + 상대방 + 재산 + 빼다 + 행동 + 실천 + 명령 + 신청 + 가능]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사 + 이혼 + 서류 + 우편 오다 + 3개월 + 기간 + 구청 + 등록 + 이혼 + 인정 + 기간 + 초과 + 이혼 + 등록 + 거부]

만약 위 기간이 지나면 다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통보 + 3개월 + 지나다 + 다시 + 합의 + 이혼 + 절차 + 등록 + 되돌리다 + 진행]

▶ 기사절차 설명 : 재판상 이혼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둘이 + 생각 + 다르다 + 합의 + 불가]

[법정에 + (따로) + 가서 + 선언 + 이혼]



영상보기
(II-2-2-2)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법에 정해진 다음 6가지 중 하나 이상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 + 재판 + (따로) + 가다 + 원하다]

[조건 + 6개 중 + 하나 + 이상 + 맞으면 + 신청 + 가능]

첫째,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첫째 + 부부 + 생활 + 의무 + 버리다 + 불륜 + 행동]

혼인한 이후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만약 + 불륜 + 동의 + (쉬고) + 용서 + 이혼 + 불가]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둘째 + 남편, 아내 + 공공이 + 목적 + 버리다]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일방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 아내 + 동거 + 살다 + 돌보다 + 협동 + 책임 + 내버려두다 + 아내, 남편 + 버리다(강조)]

-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 남편, 아내 + 부모 + 잇다(위쪽 방향) + 친척 + 나 + 학대 + 무시 + 계속 + 결혼생활 + 무리되다 + 심하다]

-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 남편, 아내 + 내 + 부모 + 잇다(위쪽 방향) + 친척 + 학대 + 무시 + 계속 + 결혼 생활 + 고통]

-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생존하였는지 또는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다섯째 + 남편, 아내 + 살았다 + 물음표 + 죽었다 + 물음표 + 알 수 없다 + (지숫자)3년 + 이상]

-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섯째 + 부부생활 + 고장 + 참다 + 못하다 + 고통 + 계속 + 회복 + 불가]

-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혼생활 + 고장 + 책임 + 사람 + 스스로 + 이혼 + 신청 + 불가 +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잘못 이후에 세월이 많이 경과하였거나 혼인관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보단 현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를 중시하여 이혼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 잘못 + 이후 + 시간 흐르다 + 결혼생활 + 재할 + 불가 + 판단 + 때]

[누구(양쪽 턱 2회) + 상관없다 + 이혼 + 승인 + 가능하다]

■ 재판상 이혼에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혼 + 재판 + ~전 + 조정 + 합의 + 절차 + 먼저 + 진행 + 필수]

■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가 없더라도 혼인이 해소됩니다. 이 점이 협의이혼과 다른 점입니다.

[재판 + 이혼 + 신청 + 인정 + 선언 + 확정]

[구청 + 등록 + 없다 + 결혼(의문형) + 끝 + 내용 + 합의 + 이혼 + 차이]

■ 다만 조정조서나 판결문을 가지고 관할관청에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판 + (따로) + 가다 + 이혼 + 선언 + 서류 내다 + 1달 안에 + 꼭 + 어기면]

[게으르다 + 돈 내다]

▶ 가사절차 설명 : 재산분할청구

■ 재산분할은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채무를 나누는 것입니다.

[재산 + 나누다 + 의미 + 이혼 + 또 + 결혼 + 취소 + 자연스럽게 + 이혼]

[남녀 + 결혼 + 중(가운데) + 같이 + 모으다 + 돈 + 빚 + 나누다]



영상보기
(II-2-2-3)

■ 부부가 합의하여 재산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 서로 + 합의 + 재산 + 나누다 + 원칙]

[합의 + 어긋나다 + 부부 + 누구 + 서로 + 재판 + 신청 + 가능]

■ 재산분할청구는 혼인이 해소된 뒤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상 이혼 또는 혼인취소 소송 중에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 나누다 + 청구 + 이혼 + 후 + 신청 + 원칙]

[하지만 + 이혼 + 선언 + 결혼 + 취소 + 소송 + 중 + 재산 + 나누다 + 청구 + 인정 + 조건 + 재산 + 나누다 + 신청 + 가능하다]

■ 소송의 상대방도 반소의 형태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 (오른쪽 방향)제기 + 법원 + 반대 + (왼쪽 방향)제기 + 법원 + 형태 + 재산 + 나누다 + 신청 + 가능하다]

■ 재산분할이 청구되면, 법원은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에 대하여 각 당사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을 정합니다.

[재산 + 나누다 + 신청]

[판사 + 결혼 + 후 + 부부 + 재산 + 빛 + 포함 + 모든 + 재산 + 부부 + 각각 + 수고 + 따라 + 퍼센트 + 결정]

■ 재산분할의 방법도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재산 + 나누다 + 방법 + 판사 + 결정]

■ 만약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그 협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 재산 + 나누다 + 방법 + 대해서 + 본인 + 사람 + 사이에 + 합의 + 완료 + 참고하다 + 판사 + 해결 + 결정]

■ 적극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말합니다.

[모으다 + 돈 + 의미 + 결혼 + 중(가운데) + 부부 + 모으다 + 재산]

■ 협력에는 경제적 협력은 물론 가사노동, 내조 등에 의한 비경제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부부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 협력]

[일 + 벌다 + 요리 + 빨래 + 수고 + (쉬고) + 이름 + 등록 + 재산 + 여러 가지 + 누구 + 이름 + 빌리다 + 전부 + 포함 + 재산 + 있다 + 나누다 + 가능]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결혼 + ~전 + 각각 + 가지고 있다]

[또 + 결혼 + 중(가운데) + 부부 + 둘 중 하나 + 본인 + 이름 + 가지다 + 재산]

[그것 + (지화)특유재산]

■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다른 일방이 재산의 유지 ·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지화)특유재산 + 재산 + 분할 + 불가 + 원칙]

[상대방 + 재산 + 모으다 + 노력 + 인정 + 때 + 재산 + 분할 + 가능]

■ 퇴직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수급권도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두다 + 돈 + 그만두다 + 연금 + 국민 + 연금 + 여러가지 + 연금 + 권리]

[결혼기간에 + 따라 + 재산 + 나누다 + 가능]

■ 소극재산은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진 채무(빚)를 말합니다.

[빚 + 의미 + 부부 + 살다 + 중(가운데) + 대출(양손 좌우)]

▣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인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 집 + 차 + 땅 + 사다 + 돈 + 빌리다 + 나누다 + 책임(좌우)]

▣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 잘못 + 상관없다 + 재산 + 나누다 + 신청 + 권리 + 가지다]

▣ 이 점이 위자료청구와 다릅니다.

[위로 + 돈 + 신청 + 불가]

▣ 재산분할청구에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재산 + 나누다 + 신청 + 소송 + 이전 + 조정 + 합의 + 절차 + 먼저 + 진행 + 필수]

▣ 재산분할청구는 혼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 나누다 + 신청 + 이혼 + 확정 + 날 + 부터 + 2년 + 안에 + 신청 + 가능]

▣ 혼인이 해소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혼 + 확정 + 날 + 뭐]

[합의 + 이혼 + 그것 + 이혼 + 구청 + 등록 + 날짜 + 이혼 + 재판 + 그것 + 이혼 + 선언 + 확정 + 또 + 결혼 + 취소 + 그것 + 결혼 + 취소 + 선언 + 확정]

▶ 가사절차 설명 :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원상회복청구

▣ 약혼해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재판상 이혼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 배상과 원상회복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혼 + 약속 + 해제 + 결혼 + 등록 + 아직 + 부부 + 해제 + 결혼 + (지화)무 + 취소 +



영상보기
(II-2-2-4)

재판 + 따로 + 가다]

[이혼 + 싫다 + 스트레스 + 힘들다 + 정신 + 피해 + 돈 + 피해 + 원인 + 보상 + 신청 + 가능]

■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위자료청구라고 합니다.

[정신 + 피해 + 돈 받다 + 신청 + 그것]

[이혼 + 위로 + 돈 + 신청 + 부르다]

■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고 재산 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 + 위로 + 돈 + 부부 + 중 + 한명 + 잘못 + 때문에 + 스트레스 + 고통 + 위로 + 목적]

[또 + 재산 + 나누다 + 부부 + 함께 + 모으다 + 재산 + 나누다]

[그래서 + 이혼 + 위로 + 돈 + 재산 + 나누다 + 신청 + 따로 + 신청 + 가능]

■ 손해배상청구는 혼인이 해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피해 + 돈 받다 + 신청 + 이혼 + 날짜 + 부터 + 3년 + 초과 + 신청 + 불가]

■ 혼인이 해소된 날의 의미는 재산분할청구에서 설명한 바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 재산 + 나누다 + 청구 + 설명 + 있다 + 다시 + 보다 + 요청]

■ 원상회복청구는 약혼해제, 혼인무효, 이혼의 무효 · 취소 등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이나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 되돌리다 + 신청]

[결혼 + 약속 + 해제 + 결혼 + (지화)무 + 이혼 + (지화)무 + 취소 + 여러가지 + 따라 + 돈 + 물건 + 반납 + 신청]

▶ 관련용어

▮ 적극재산

토지, 집, 건물 등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주식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부부 + 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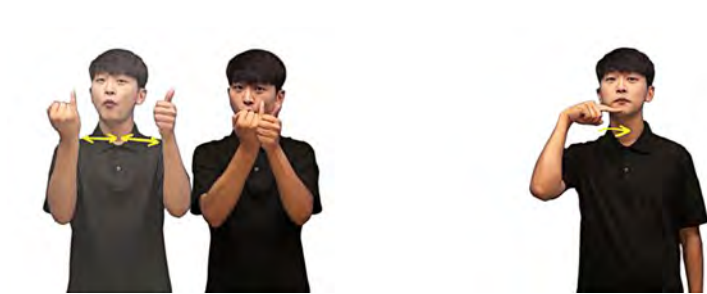


영상보기
(II-2-2-5)

▮ 소극재산

대출금채무나 개인에 대한 빚, 전세금반환채무 등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채무.

[부부 + 빚]



영상보기
(II-2-2-6)

▮ 기여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말함.

[수고 + 비율]



영상보기
(II-2-2-7)



위자료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혼이 해제되거나 사실혼이 파기되거나 이혼하게 된 경우 등에서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의미함.

[이혼 + 위로 + 돈]



영상보기
(II-2-2-8)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갚아 주어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피해 + 돈 받다]



영상보기
(II-2-2-9)



3) 혼인 · 이혼의 무효 및 취소

▶ 가사절차 설명 : 혼인의 무효

■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로 되어 있으나 그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둘이 + 결혼 + 등록 + 여러 가지 + 문제 + 발생 + 결혼 + (지화)무]



영상보기
(II-2-3-1)

■ 혼인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 (지화)무 + 이유 + 뭐]

■ 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첫째 + 남녀 + 당사자 + 사이에 + 결혼 + 합의 + 아직]

■ 둘째,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한 때.

[둘째 + 8 + (한자)촌 + 까지 + 핏줄 + 친척 + 결혼]

■ 셋째,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있거나 있었던 때.

[셋째 + 남편 + 아내 + 가족 + 친척 + 있다 + 없다]

■ 넷째,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사이 · 양모와 양자 사이의 혼인)가 있었던 때.

[넷째 + 남, 녀 + 사이 + 키우다 + 부모 + 결혼 + 관계 + (예 들다 + 키우다 + 아버지 + 딸 + 결혼 + 또 + 키우다 + 어머니 + 아들 + 결혼) + 때]

■ 혼인이 무효이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 + (지화) 무 + 가정 + 법원 + 결혼 + (지화)무 + 소송 + 신청 + 가능]

■ 그러나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 결혼 + 처음부터 + 효과 + 없다 + 선언 + 아직 + ~라도 + 언제든지 + (지화)무 + 주장 + 가능]

■ 혼인이 무효일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친족관계,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혼인에 의한 법률관계도 모두 무효로 됩니다.

[결혼 + (지화)무 + 원인 + 가족 + 친척 + 관련 + 사람 + 집안일 + 재산 + 받다 + 결혼 + 관련 + 전부 + (지화)무]

■ 혼인무효에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 (지화)무 + 책임 + 사람 + 피해 + 돈 받다 + 신청 + 가능]

■ 혼인무효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지만, 손해배상청구는 조정 전치주의의 대상이 됩니다.

[결혼 + (지화)무 + 조정 + 불가]

[하지만 + 피해 + 돈 받다 + 신청 + 조정 + 합의 + 절차 + 먼저 + 진행 + 필수]



가사절차 설명 : 혼인의 취소

■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나 그 혼인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혼인취소판결을 받아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 + 신고 + 완료 + 안 맞다 + 발견]

[신청 + 통지 + 결혼 + 취소]



영상보기
(II-2-3-2)

■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 취소 + 이유 + 뭐]

■ 첫째,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혼인한 때.

[첫째 + 나이 + 18 + 아래 + 결혼]

❑ 둘째, 만 18세 이상인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등의 동의 없이 혼인한 때.

[둘째 + 나이 + 18 + 이상 + 아이 + 또 + 생각 + 불가능 + 성인 + 부모, 보호자 + 몰래 + 결혼]

❑ 셋째, 혼인할 수 없는 친척 사이에 혼인한 때(민법 제809조 제2항, 제3항)

[셋째 + 가깝다 + 친척 + 사이 + 모르고 + 결혼]

❑ 넷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법률혼)한 때.

[넷째 + 결혼 + 신고 + 끝 + 사람 + 또 + 결혼 + 중복 + 신고]

❑ 다섯째,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다섯째 + 함구 + 결혼 + 원인 + 잘못 + 크다 + 책임 + 취소]

❑ 여섯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 경우 사기를 알았거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내에만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 사기 + 협박 + 결혼 + 그때 + 사기 + 알다 + 또 + 협박 + 감투 벗다 + ~부터 + 3개월 + 안에 + 결혼 + 취소 + 가능]

❑ 혼인취소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취소에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조정 전치주의의 대상이 됩니다.

[결혼 + 거짓 + 원인 + 취소 + 조정 + 아니다]

[하지만 + 잘못 + 책임 + 사람 + 대한 + 피해 + 돈 받다 + 신청 + 이것]

[조정 + 합의 + 절차 + 먼저 + 진행 + 필수]

❑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장래에 향하여 해소됩니다.

[결혼 + 취소 + 선언 + 확정 + 결혼 + 없다]

❑ 따라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그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재산상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혼 + 중 + 출생 + 자녀]

[그대로 + 가능 + 부부 + 사이에 + 재산 + 물려주다 + 그대로 + 효과 + 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취소청구와 함께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아직 + 자녀 + 있다 + 때]

[결혼 + 취소 + 신청 + 같이 + 나이 아직 + 자녀 + 부모 + 권리 + 또 + 키우다 + 사람 + 지정 + 또 + 키우다 + 돈 + 자녀 + 만남 + 협의 + 신청 + 가능]

▶ 가사절차 설명 : 이혼의 무효

협의이혼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되었으나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거나 이혼신고 당시 부부 양쪽 또는 한쪽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로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상보기
(II-2-3-3)

[합의 + 이혼 + 등록 + 2줄(각각 1줄씩 내려오게) + 이후에 + 생각 + 바뀌다 + 이혼 + 등록 + 때 + 부부 + 둘 + 각각 + 판단 + 부족 + 효력 +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 + 남자 여자 + 합의 + 등록 + 후]

[다르다 + 이유 + 상관없다 + (지화)무 + 신고 + 불가]

이혼이 무효이면 처음부터 이혼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 + (지화)무 + 선언 + 이혼 + 신청 + ~전 + 되돌리다 +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혼신고가 수리되면 형식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이혼의 효력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 이혼 + 신청 + 내다 + 서류 + 효력 + 있다]

[이혼 + (지화)무 + 확인 + 재판 + 효력 + 사라지다 + 신청]



가사절차 설명 : 이혼의 취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협의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청구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가능합니다.

[사기 + 협박 + 강요 + 간단하게 + 마지못하다 + 합의 + 이혼 + 그것]

[3개월 + 안에 + 이혼 + 취소 + 신청 + 가능]



영상보기
(II-2-3-4)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협의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혼 + 취소 + 선언 + 확정 + 원래대로 + 반환 + 결혼 + 생활 + 계속]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친 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 취소 + 이유 + 누구(의문형) + 조정 + 진행 + 후 + 관련 + 피해 + 돈 받다 + 청구]

4)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



가사절차 설명

-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일방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 + 등록 + 아직 + 부부 + 생활 + 실제 + 남, 녀 + 결혼 + 신청 + 협조 + 안하다]
[남, 녀 + 서로 + 부부 + 증거 + 가정 + 법원 + 소송 + 가능]



영상보기
(II-2-4-1)

- 일방 배우자는 그 인용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 녀 + 둘 중 하나 + 선언 + 확정 + 때 + ~부터 + 한 달 + 안에 + 혼자 + 결혼 + 신고 + 법 + 인정 + 받다]

- 연금, 보험금 등의 수급권자로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혼관계에 있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3자는 사실혼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 + 돈 + 연금 + 결혼 + 등록 + 아직 + 부부 + 실제 + 남편, 아내 + 관계 + 확인 + 필요 + 때]
[부부 + 맞다(의문형) + 살다 + 확인 + 소송 + 중립 + 사람 + 부부 + 생활 + 가짜 + 소송 + 가능 + 장소 + 어디(의문형) + 가정법원]

-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에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결혼 + 등록 + 아직 + 부부 + 맞다 + 인정 + 재판 + ~전]
[조정 + 합의 + 절차 + 먼저 + 진행 + 필수]

3. 부모와 자 관련 절차 및 법률용어

1) 성과 본의 변경



가사절차 설명

■ 부모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부모 + 결혼 + 중 + 출생 + 사람]

[아버지 + (오른손)이름 + (왼손)3 + (오른손)2지를 + (왼손)2지에 가리키다 + 이름 + 뿌리 + 원칙]



영상보기
(II-3-1-1)

■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단 + 부모 + 결혼 + 신고 + 때 + 협의 + 완료]

[어머니 + (오른손)이름 + (왼손)3 + (오른손)2지를 + (왼손)2지에 가리키다 + 이름 + 뿌리 + 따라가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 + 행복 + 이익 + 위하다]

[자녀 + (오른손)이름 + (왼손)3 + (오른손)2지를 + (왼손)2지에 가리키다 + 이름 + 뿌리 + 바꾸다 + 필요 + 때]

[신청 + 판사 + 허락 + 변경 + 가능하다]

■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와 해당 자녀이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 자녀 + 권한 + 가지다]

[자녀 + 나이 아직 + 법 + 대신 + 사람 + 맡기다 + 미달 + 누구(의문형) + 친척 + 재판 + 조사 + 사람 + 가능]

■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된 성과 본에 대하여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이나 다른 성과 본으로 변경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름 + (왼손)3 + (오른손)2지를 + (왼손)2지에 가리키다 + 이름 + 뿌리 + 반납 + 또 + 변경 + 허가 + 재판 + 요청가능]

2) 인지

▶ 가사절차 설명 : 임의인지

■ 임의인지는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녀를 부 또는 모가 임의로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화)임의인지 + 결혼 + 이외 + 아버지 + 또 + 어머니 + 출생 + 아이 + 스스로 + 자녀 + 인정 + 등록 + 법 + 인정]



영상보기
(II-3-2-1)

■ 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대신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 생각 + 불가능 + 성인 + 때 + 생각 + 불가능 + 뒤 + 도와주다 + 사람 + 동의 + 받아 + 인지 + 가능]

[아버지 + 생각 + 불가능 + 성인 + 뒤 + 도와주다 + 사람 + 둘 + 제외 + 자식 + 인정 + 신청 + 불가]

■ 출생 전의 태아에 대하여도 인지할 수 있고,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 + 이전 + 임신 + 아기 + 자녀 + 인정 + 등록 + 가능]

[자녀 + 사망 + 후 + 후손 + 있다 + 때 + 자녀 + 인정 + 등록]

■ 인지신고가 수리되면(유언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하면) 출생시에 소급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깁니다.

[자녀 + 인정 + 등록 + 완료하다 + 괄호 () + 죽다 + ~전 + 말 + 자녀 + 인정 + 때 + 말하는 + 사람 + 죽다]

[출생 + 때 + 부터 + 지금까지 + 계산하다 + 부모 + 자녀 + 법 + 인정 + 관계]



가사절차 설명 : 재판상 인지

부 또는 모가 인지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혼인 외 출생자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부 또는 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 아니면 + 어머니 + 자식 + 인정 + 안하다 + 못하다 + 때]

[결혼 + 이외 + 출생 + 아이]

[직접 + 법원 + 가다 + 소송 + 신청]

[아버지 + 아니면 + 어머니 + 자녀 + 법 + 인정 + 받다 + 의미]



영상보기
(II-3-2-2)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은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이들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 그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 이외 + 출생 + 아이 + 또 + 핏줄 + 후손]

[부모 + 자식 + 인정 + 신청 + 가능]

[나이 아직 + 또 + 생각 + 불가능 + 성인 + 때]

[법 + 대신 + 사람 + 신청 + 가능]

인지청구의 상대방은 부 또는 모입니다.

[부모 + 자식 + 인정 + 신청 + 누구(의문형) + 아버지 + 아니면 + 어머니]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 또 + 어머니가 + 사망 + 때]

[사망 + 안다 + 날 + 부터 + 2년 + 안에 + 재판 + 조사 + 사람 + 자식 + 인정 + 신청 + 소송 + 가능]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출생시에 소급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깁니다.

[부모 + 자식 + 인정 + 신청 + 인정 + 선언 + 끝]

[출생 + 날 + 권리 + 복원 + 모두 + 계속 + 부 + 또는 + 모 + 자녀 + 맞다 + 법 + 인정]

■ 인지된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인정 + 받다 + 자녀 + 아버지 + (오른손)이름 + (왼손)3 + (오른손)2지를 + (왼손)2지에 가리키다 + 이름 + 뿌리 + 따르다]

■ 그러나 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 부모 + 협의 + 또 + 판사 + 허가]

[원래 (오른손)이름 + (왼손)3 + (오른손)2지를 + (왼손)2지에 가리키다 + 이름 + 뿌리 + 계속 + 사용 + 가능]



가사절차 설명 : 인지의 무효

■ 임의인지는 다음의 경우 무효가 됩니다.

[자식 + 인정 + 등록 + 다음 + 내용 + 있다 + (지화)무]



영상보기
(II-3-2-3)

■ 첫째,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때.

[첫째 + 부모 + 자녀 + 핏줄 + 관계 + 증명 + 없다]

■ 둘째, 인지자에게 인지의사가 없었던 때.

[둘째 + 부모 + 입장 + 자식 + 인정 + 원하다 + 없다]

■ 셋째, 인지가 적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때.

[셋째 + 자식 + 인정 + 방식 + 법에 + 맞게 + 하지 + 못하다 + 때]

■ 넷째, 피인지자가 제3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데 친생부인판결에 의해 그 추정을 반복시키지 않고 인지신고된 때.

[넷째 + 아이 + 다른 사람 + 자녀 + 진짜 + 핏줄 + 추정(아마)]

[하지만 + 친부모 + 자식 + 부정 + 재판 + 없이 + 친부모 + 자식 + 인정 + 등록 + 때]

■ 인지무효는 인지자, 피인지자, 제3자 등 누구든지 기간 제한 없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 + 아이 + 자녀 + 관계없다]

[누구나 + 기간 + 제한 + 무관 + (지화)무 + 주장 + 가능]

▶ 가사절차 설명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자녀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신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 + 부모 + 이와 관련 + 사람]

[자녀 + 인정 + 등록 + 있다 + 안다 + 날짜부터 + 1년 + 안에 + 반대 + 신청 + 가능]



영상보기
(II-3-2-4)

▶ 가사절차 설명 : 인지의 취소

■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 협박 + 심한 + 착각/실수 + 자연스럽게 + 자녀 + 인정 + 등록 + 때]

[가정 + 법원 + 취소 + 신청 + 가능]



영상보기
(II-3-2-5)

■ 인지취소청구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취소 + 청구 + 이것]

[사기 + 실수 + 깨달다 + 날 + 또 + 협박 + 벗어나다 + 날 + 부터 + 6개월 + 이내 + 신청 + 가능]

3) 친자관계 존부 등

▶ 가사절차 설명 : 친생부인의 소

■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 혼인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혼인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결혼 + 중 + 임신 + 아이 + 또 + 결혼 + 동의 + 200일 + 후 + 출생 + 아이 + 또 + 결혼 + 끝 + 날부터 + 300일 + 안에 + 출생 + 아이 + 모두]

[남편 + 진짜 + 핏줄 + 추정]



영상보기
(II-3-3-1)

■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자녀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 남편 또는 아내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남편 + 진짜 + 자녀 + 예상 + 그것 + 실제 + 아니다 + 때]

[남편, 아내 + 나 + 아이 + 아니다 + 소송 + 법 + 핏줄 + 관계 + 부정/아니다 + 가능]

■ 다른 사람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친생추정이 번복되기 이전에는, 친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친생부도 그 자녀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의심 + 아이 + 핏줄 + 다르다 + 사람 + 것(강조) + 소송 + 자연스럽게 + 선언 + 아직 + 때]

[부모 + 자식 + 인정 + 신청 + 소송 + 불가 + 진짜 + 아버지 + 자녀 + 인정 + 불가]

■ 부부의 한쪽이 원고가 되어 부부의 다른 한쪽 또는 자녀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합니다.

[부부 + 중(가운데) + 서로 + 하나 + 상대방 + 또 + 자녀 + 부르다 + 소송 + 신청]

■ 피고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르다 + 사람 + 모두 + 사망 + 때 + 재판 + 조사 + 사람 + 부르다 + 소송 + 신청 + 가능]

■ 다만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 남편 + 아내 + 생각 + 불가능 + 성인 + 때]

[그것 + 생각 + 불가능 + 뒤 + 도와주다 + 사람 + 관리자 + 동의 + 받다 + 자녀 + 아니다 + 소송 + 신청 + 가능]

■ 남편 또는 아내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남편 + 아니면 + 아내 + 죽다 + ~전 + 말 + 내용에 + 맞다 + 내 + 자녀 + 아니다 + 표시 + 때]

[죽다 + ~전 + 말 + 관련 + 행동 + 담당 + 사람 + 직접 + 자녀 + 아니다 + 소송 + 신청 + 대행 + 필수]

■ 부부의 한쪽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혈연관계의 진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상대방이 모두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부 + 중(가운데) + 서로 + 하나 + 고소 + ~때]

[핏줄 + 관계 + 솔직하다 + 내용 + 알다 + 날짜 + 부터 + 2년]

[또 + 상대방 + 모두 + 죽다 + 어떻게? + 죽다 + 알다 + 날짜 + 부터 + 2년 + 안에 + 재판 + 조사 + 사람 + 소송 + 꼭]

■ 자녀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아이 + 출생 + ~후 + 핏줄 + 자녀 + 인정 + 사람]

[다시 + 아니다 + 소송 + 불가]

■ 친생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친생추정이 번복되어 남편과 자녀의 부자관계는 소급해서 소멸되므로 그 생부가 인지하는 등에 의하여 새로운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나 + 아이 + 아니다 + 인정 + 선언 + 확정 + (쉽) + 핏줄 + 추측 + 아니다 + 확정 + 남편 + 자녀 + 관계 + 자녀 + 출생 + 합산 + 사라지다]

[핏줄 + 아버지 + 자식 + 인정 + 원인 + 아버지 + 자녀 + 관계 + 가능]



가사절차 설명 : 친생부인의 허가와 인지의 허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어머니의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결혼 + 종료 + 날부터 + 300일 + 안에 + 출생 + 자녀]

[어머니 + 이혼 + 남편 + 관계 + 자식 + 추측]



영상보기
(II-3-3-2)

이 경우 친생부인의 소 이외에 친생부인의 허가, 인지의 허가에 의하여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전남편과 자녀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 나 + 자녀 + 아니다 + 소송 + 이외]

[전남편 + 자녀 + 아니다 + 알리다 + 거부 + 허가 + 자녀 + 인정 + 허가 + 의하여]

[전남편 + 핏줄 + 아니다 + 전남편 + 자녀 + 사이 + 법 + 부자관계 + 없다 + 관계 + 끊다 + 가능하다]

그러나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 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 이혼 + 남편 + 등본 + 자녀 + 있다 + 때]

[너 + 아이 + 아니다 + 소송 + 필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 아니면 + 어머니 + 이혼 + 남편]

[가정 + 법 + 곳 + 전남편 + 자녀 + 아니다 + 알리다 + 거부 + 허가 + 요청 + 가능]

친생부인의 허가심판이 확정되면 전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생추정이 번복되어 생부가 그 자녀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 + 자녀 + 아니다 + 알리다 + 거부 + 허가재판 + 결정]

[전남편 + 자녀 + 핏줄 + 추측 + 바뀌다 + 맞다 + 아버지 + 그것 + 자녀 + 인정 + 가능]

생부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다 + 아버지 + 가정법원 + 자녀 + 인정 + 허가 + 요청 + 가능]

■ 인지 허가심판이 확정된 후 친생자출생 신고를 하여야 전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생추정이 반복되고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생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인정됩니다.

[자녀 + 인정 + 허가 + 재판 + 확정 + 후 + 맞다 + 자녀 + 출생 + 신고 + 필요]

[전남편 + 자녀 + 사이 + 진짜 + 핏줄 + 추측 + 바뀌다 + 인정 + 효과 + 시작]

[진짜 + 아버지 + 자녀 + 사이 + 인정 + 법 + 효력 + 가능]

▶ 기사절차 설명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 특정한 사이에 법률상의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소입니다.

[특별 + 사람 + 사이 + 진짜 + 핏줄 + 관계 + 있다 + 없다 + 확인 + 소송 + 요청]



영상보기
(II-3-3-3)

■ 법적인 친자관계가 있는데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나 + 자녀 + 법 + 부합하다 + 가족관계 + 등록 + 없다]

[나 + 자녀 + 진짜 + 핏줄 + 맞다 + 확인 + 소송]

■ 반면, 법적인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을 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 자녀 + 법 + 아니다 + 가족관계 + 등록 + 있다]

[나 + 자녀 + 아니다 + 확인 + 소송 + 가능하다]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당사자 뿐 아니라 친생자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 핏줄 + 자녀 + 맞다 + 아니다 + 확인 + 소송 + 이것]

[본인 + 이외 + 나 + 핏줄 + 자녀 + 법 + 관련 + 사람 + 소송 + 신청 + 가능]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여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을 바로잡게 됩니다.

[나 + 찌줄 + 자녀 + 맞다 + 아니다 + 소송 + 결정 + 선언]

[당사자 + 가족관계등록부 + 정정 + 신청 + 결과 + 등록]

4) 입양

가사절차 설명 : 성년 · 미성년 입양절차

-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행위입니다.

[사람 +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 + 이동]



영상보기
(II-3-4-1)

-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수어가 있는 곳에) + 이동 + 합의]

[부모 + 희망/원하다 + 사람 + 친부모 + 가짜부모 + 중복 + 원하다 + 아이 + 사이에 + 법적 + 관계 + 의견 + 일치 + 필수]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입양을 승낙합니다.

[나이 + 13세 + 포함 + 이상 + 아동 + 때 + 법 + 대신 + 사람 + 예를 들면 + 부모 + 권리 + 사람 + 나이 아직 + 뒤 + 도와주다 + 사람 + 동의 + 받아 +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이동 + 허락]

[13세 + 아래 + 때 + 법 + 대신 + 사람 + 대신 + 승낙 + 결정]

-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이 아직 + 아이]

[판사 +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 + 이동 + 승낙 + 필수]

■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각 + 불가능 + 성인 +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 + 이동 + 또 + 친부모 + 가짜부모 + 중복 + 아이 + 때]

[생각 + 불가능 + 뒤 + 도와주다 + 사람 + 동의 + 또 + 가정 + 판사 + 허가 + 필수]

■ 양부모가 되려는 자가 성년자이면 남녀, 기혼, 미혼, 자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입양할 수 있습니다.

[가짜 + 부모 + 원하다 + 사람 + 성인 + ~이면]

[남녀 + 결혼 + 완료 + 결혼 + 아직 + 자식 + 있다 + 없다 + 상관 + 없다]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 + 이동 + 가능]

■ 배우자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하는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남편 + 아내 + 먼저 + 의견 + 합의 + 필수 + 후]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 + 이동 + 가능]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존속 또는 연장자는 양자로 하지 못합니다.

[가짜 + 부모 + 원하다 + 사람]

[가족 + 있다(위쪽 방향) + 친척 + 아니면 + 나이 + 많다 + 사람]

[자녀 + 인정 + 불가]

■ 양자가 될 자는 성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 + 이동 + 자녀 + 성인 + 나이 아직 + 모두]

[부모 + 동의 + 받다 + 필수]

■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자가 되려면 다른 쪽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남편, 아내 + 있다 + 사람]

[타인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이동 + 자녀 + 원하다 + 때]

[아내, 남편 + 동의 + 받다 + 필수]

■ 양부모와 양자가 입양신고를 하면 입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가짜 + 부모 + 또 + 진짜 + 자녀]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이동 + 신청 + 인정 + 효과 + 가능]

■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로서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므로 양부모의 혈족 · 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 + 이동 + 자녀 + 때 +부터]

[가짜 + 부모 + 법적 + 자녀 + 키우다 + 부모 + 진짜 + 핏줄 + 자녀 + 평등 + 진짜 부모 + 가족 + 친척 + 관계 + 지속]

■ 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서로 + 키우다 + 권리 + 물려받다 + 재산 + 권리 + 생기다]

■ 미성년자인 양자의 친권자는 양부모가 되고 친생부모는 친권을 상실합니다.

[나이 아직 + 진짜 + 부모 + 권리 + 인정 + 진짜 + 부모 + 권리 + 없다]

■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되므로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 + 이동 + ~전 + 친척 + 관계 + 그대로 + 이동 + 가능]

[친부모 + 친자식 + 관계 + 권리 + 말고 + 나머지 + 그대로 + 가능]

■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때문에 + 친부모 + 진짜부모 + 중복 + 아이 + 친부모 + 진짜 + 부모 + 모두 + 재산 + 나누다 + 권리 + 가지다 + 가능]

[또 + 거꾸로 + 친부모 + 가짜부모 + 중복 + 아이 + 아래 + 손자 + 없다 + 사망 + 때]

[친부모 + 가짜 + 부모 + 모두 + 같이(양손 집게 모양으로 대각선방향으로 꼬집는 행동) + 재산 + 나누다 + 권리 + 가지다]

■ 양자의 성과 본은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친부모 + 가짜부모 + 중복 + 자녀 + 진짜 + 아버지 + (오른손)이름 + (왼손)3 + (오른손)2지를 + (왼손)2지에 가리키다 + 이름 + 뿌리 + 가리키다 + 관계 + 친부모 + 같다]

■ 그러나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 친부모 + 가짜부모 + 중복 + 자녀 + 행복 + 이익 + 위하다]

[가짜 + 부모 + (오른손)이름 + (왼손)3 + (오른손)2지를 + (왼손)2지에 가리키다 + 이름 + 뿌리 + 관계 + 변경 + 판사 + 허락 + 필요]



가사절차 설명 : 친양자 입양절차

■ 친양자 입양은 양자를 기존의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법률상 완전한 양부모의 친생자로 입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손)친부모 + 가짜 + 부모 + 중복 + 아이 + 친부모 + 끊다 + 친부모 + 끊다 + 가짜부모 + 등록 + 아이 + 말하다]



영상보기
(II-3-4-2)

■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데려오다 + 원하다 + 부모]

[가정법원 + 친부모 + 끊다 + 가짜부모 + 등록 + 신청 + 결정 + 받다 + 필수]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년 + 이상 + 결혼 + 중 + 부부 + 생각 + 동의 + 데려오다 + 신청 + 필수]

■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 결혼 + (지숫자)1년 + 이상 + 부부 + 이것 저것 + (지숫자) 1명]

[다른 + 관련 + 친자녀 + 친부모 + 끊다 + 가짜부모 + 등록 + 데려오다 + 원하다 + 혼자 + 신청]

■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하고, 그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친부모 + 끊다 + 가짜부모 + 등록 + 나이 아직 + 원칙]

[또 + 친부모 + 친자녀 + 데려가다 + 끊다 + 동의 + 필수]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

[(지숫자)13 + 이상 + 법 + 대신 + 사람 + 동의]

[(지숫자)13 + 이하 + 법 + 대신 + 사람 + 대신 + 허락 +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 + 이동 + 가능]

■ 친양자 입양 허가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됩니다.

[가짜 + 부모 + 이름 + 성 + 기본 + 사용 + 가짜 + 자식 + 사람 + 구하다 + 허락 + 신청 + 인정 + 재판 + 확정]

[가짜 + 자식 + 가짜 + 부모 + 결혼 + 중 + 출생 + 자식 + 인정]

■ 따라서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친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발생하고,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며, 양부모만이 친양자의 친권자가 됩니다.

[때문에 + 가짜 + 자식 + 가짜 + 부모 + 또 + 가짜 + 부모 + 관련 + 가족 + 사이 + 서로 + 키우다 + 관계 + 또 + 재산 + 나누다 + 관계 + 발생]

[가짜 + 아버지 + (오른손)이름 + (왼손)3 + (오른손)2지 + (왼손)2지 + 가리키다 + 이름 + 뿌리 + 변경]

[가짜 + 부모 + 오직 + 법적 + 자식 + 맞다 + 부모 + 권리 + 가능]

■ 반면, 친양자 입양 전의 친생부모와 그 친족과의 친족관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부양관계,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됩니다.

[친부모 + 끊다 + 가짜부모 + 등록 + 친부모 + 또 + 관련 + 친척 + 전부 + 관계 + 부양 + 상속 + 끊다]

■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 입양한 때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의 친족관계가 존속합니다.

[오직 + 부부 + 중(가운데) + (지숫자)1 명 + 남편, 아내 + 자식 + 혼자 + 결정 + 데려오다 + 때]

[남편, 아내 + 관련 + 친척 + 관계 가능]

▶ 기사절차 설명 : 입양특례법상 입양절차

■ 입양특례법상 입양은 보호시설에 있는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특례법 등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하여 친양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상보기
(II-3-4-3)

[아이 + 데려오다 + 특수 + 법 + 안에 + 아이 + 데려오다 + 그것]

[보호 + 시설 + 살다 + 나이 아직 + 보호 + 필요 + 아동 + 판사 + 허락 + 데려오다 + 가족 + 관계 + 필요]

■ 양자가 될 사람은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법적 + 인정 + 자녀 + 가능 + 사람 + 나이 + 18 + 미만 + 가능]

[친부모 + 데려가다 + 동의 + 필요]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아이 + 데려오다 + 특수 + 법 + 따르다 + 데려오다 + 아동]

[개인 + 사람 + 법 + 정하다 + 법 + 자녀 + 평등 + 자격 + 가능]

5) 입양의 무효·취소



가사절차 설명 : 입양의 무효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만 입양에 실제상 또는 절차상 잘못이 있어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 + 신청 + 절차 + 진행 + 누락 + 법 + 문제 +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 + 이동 + 효력 + 없다]



영상보기
(II-3-5-1)

입양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이동 + 내용 + 있다 + 무산]

첫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첫째 + 부모 + 원하다 + 사람 + 아이 + 사이에 + 합의 + 생각 + 없다]

둘째,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등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입양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한 때.

[둘째 + 판사 + 허가 + 필수 + 위반 + 마음대로 + 데려오다]

셋째, 13세 미만을 양자로 입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이 없는 때.

[셋째 + 나이 13세 + 아래 + 법 + 대신 + 사람 + 동의 + 아직 + 마음대로 + 데려오다]

넷째,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를 입양한 때.

[넷째 + 부모 + 중심 + 위 + 친척 + 나이 많은 사람 + 데려오다]

입양이 무효이면 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입양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이동 + 무산 + 가정
[판사 + 무산 + 확인 + 소송 + 신청 + 가능]

[만약 + 데려오다 + 법 + 신청 + 아직 + 재판 + 없이 + 무산 + 말하다 + 가능]

■ 입양무효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산 + 제기 + 책임 + 사람 + 대하다 + 피해 + 돈 받다 + 신청 + 가능]

■ 손해배상청구는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피해 + 돈 받다 + 신청 + 그것 + 조정 + 합의 + 절차 + 먼저 + 진행 + 필수]



가사절차 설명 : 입양의 취소

■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만 입양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입양취소판결을 받아 입양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이동 + 신청 + 있다 + 하지만 + 불법 + 이유 + 있다]

[취소 + 재판 + 선언 + (양쪽)관계 + 사라지다 + 뜻]



영상보기
(II-3-5-2)

■ 입양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이동 + 내용 + 있다 + 취소]

■ 첫째, 미성년자가 입양을 한 때.

[첫째 + 나이 아직 + 아이가 + 자기 + 밑으로 +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이동]

■ 둘째, 13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입양승낙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때.

[둘째 + 13세 이상 + 아이 + 데려가다 + 동의 + 대해서 + 법 + 대신 + 사람 + 동의 + 아직]

■ 셋째, 양자의 부모의 입양동의를 없는 때.

[셋째 + 친부모 + 데려가다 + 동의 + 아직]

■ 넷째,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하거나 양자가 된 때.

[넷째 + 생각 + 불가능 + 성인 + 생각 + 불가능 + 뒤 + 도와주다 + 사람 + 동의 + 아직 + 데러오거나 + 다른 부모 +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 + 이동 + 계약]

■ 다섯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입양하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된 때.

[다섯째 + 부부 중 한명 + 독재 +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 + 이동 + 아니면 + 부부 + 사이 + 동의 + 아직 + 다르다 + 부모 + 귀속 + 이미]

■ 여섯째, 양부모 또는 양자가 입양 당시 양친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여섯째 +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이동 + 그것 + 때 + 부합하다 + 이유 + 모르다]

■ 일곱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일곱째 + 사기 + 협박 + 때문에 + 어쩔 수 없다 + 동의]

■ 입양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이동 + 취소 + 재판 + 결과 + 확정 + 때부터 + 가족 + 친척 + 관계 + 끝]

■ 따라서 입양 취소 전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유효합니다.

[자연스럽게 + 취소 + ~전 + 법 + 관계 + 살아있다/인정]

6) 파양



가사절차 설명 : 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양친자관계를 임의로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짜 + 부모 + 가짜 + 자녀 + 둘 + 끊다 + 합의 + 입양 + 등록 + 제명]



영상보기
(II-3-6-1)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은 할 수 없고 재판상 파양만 가능합니다.

[나이 아직 + 아니면 + 생각 + 불가능 + 성인]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이동 + 협의 + 재판 + 입양 + 등록 + 제명 + 가능]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생각 + 불가능 + 성인 + 가짜 + 부모]

[생각 + 불가능 + 뒤 + 도와주다 + 사람 + 동의 + 받다 + 필요 + 입양 + 등록 + 제명]

양부모와 양자 사이 파양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파양신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짜 + 부모 + 가짜 + 자녀 + 사이 + 입양 + 등록 + 제명 + 생각 + 합의 + 필요]

[입양 + 등록 + 제명 + 신청 + 갈라지다 + 가능]

파양의사가 없으면 협의상 파양은 무효입니다.

[등록 + 제명 + 생각 + 없다 + (지화)무]

사기나 강박으로 파양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협의상 파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 협박 + 입양 + 등록 + 제명 + 완료]

[가정법원 + 협의 + 입양 + 등록 + 제명 + 취소 + 반납 + 신청 + 가능]



가사절차 설명 : 재판상 파양

법률상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유효하게 성립된 양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 + 정하다 + 원인 + 있다 + 재판 + 선언 + 입양 + 등록 + 제명]



영상보기
(II-3-6-2)

재판상 파양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려오다 + 키우다 + 끊다 + 원인 + 그 중에 + 있다]

첫째,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때.

[첫째 + 가짜 + 부모 + 자녀 + 학대 + 방관 + 아니면 + 행복 + 이익 + 상처 + 주다]

둘째,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둘째 + 가짜 + 자녀 + 부모 + 효도 + 저급, 저질]

셋째, 양부모나 양자의 생존 또는 사망 여부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셋째 + 가짜 + 부모 + 또 + 가짜 + 자녀 + 살았다(의문형) + 죽었다(의문형) + 3년 + 이상 + 애매]

넷째,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넷째 + 이외 + 가짜 + 부모 + 자녀 + 관계 + 계속 + 어렵다 + 중요한 + 이유 + 발생]

양부모와 양자는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짜 + 부모 + 자녀 + 서로 + 상대 + 가정법원 + 등록 + 제명 + 신청 + 가능]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입양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합니다.

[가짜 + 자녀 + 나이 아직]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이동 + 부모 + 동의 + 등록 + 제명 + 신청]

■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동의를 한 사람이 양자 대신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짜 + 자녀 + 나이 + 13세 + 미만 +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이동 + 동의 + 사람 + 직접 + 등록 + 제명 + 신청]

■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나 양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 또 + 가짜자녀 + 생각 + 불가능 + 성인 + ~면 + 생각 + 불가능 + 뒤 + 도와주다 + 사람 + 동의 + 받다 + 제명 + 등록 + 신청]

■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 + 조사 + 사람 + 가짜자녀 + 나이 + 아직 + 생각 + 불가능 + 성인 + 대신 + 등록 + 제명 + 신청]

■ 협의상 파양신고 및 재판상 파양판결이 확정되면 입양으로 인한 양친자관계와 친족관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부양관계, 상속관계, 친권관계는 모두 종료됩니다.

[합의 + 등록 + 제명 + 또 + 재판 + 등록 + 제명 + 확정]

[부모자식 + 관계 + 모두 + 종료]

7)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

▶ 가사절차 설명

■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부모 + 끊다 + 가짜부모 + 등록 + 자녀 + 친부모 + 둘 중 한명 + 나 + 책임 + 없다 + 동의 + 아직 + 때]

[내용 + 알다 + 부터 + 6개월 + 안에 + 가정법원 +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이동 + 취소 + 신청 + 가능하다]



영상보기
(II-3-7-1)

■ 친양자 파양 청구는 다음의 파양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친부모 + 끊다 + 가짜부모 + 등록 + 자녀 + 등록 + 제명 + 신청]

[다음 + 이유 + 둘 중 하나 + 맞아야 + 한다]

■ 첫째,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한 때.

[첫째 + 가짜 + 부모 + 아이 + 학대 + 방관 + 이외 + 행복 + 이익 + 상처 + 줄 때]

■ 둘째,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해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때.

[둘째 + 아이 + 가짜 + 부모 + 불효 + 학대 + 원인 + 관계 + 어렵다 + 때]

■ 친양자 파양 청구권자는 친양자, 양부모, 친생부모, 검사입니다.

[등록 + 제명 + 신청 + 누구(의문형)]

[자녀 + 가짜 + 부모 + 친부모 + 재판 + 조사 + 사람 + 가능]

■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친양자관계는 종료됩니다.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이동 + 취소 + 아니면 + 등록 + 제명 + 확정 + 때부터]

[가짜 + 부모 + 자식 + 관계 + 종료]

■ 친양자 입양 전 친족관계는 부활하고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이동 + ~전 + 가족 + 친척 + 복원 + (오른손) 이름 + (왼손)3 + (오른손)2지를 + (왼손)2지에 가리키다 + 이름 + 뿌리 + 되돌려놓다]

8) 친권 및 양육 관련



가사절차 설명 :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 등

■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부모 + 권리]

[부모 + 나이 아직 + 자녀 + 보호 + 교육 + 법 + 권리 + 행동 + 대행 + 재산 + 관리 + 권리 + 책임 + 가지다]



영상보기
(II-3-8-1)

■ 다만 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녀를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 부모 + 권리 + 가지고 + 때문에 + 자녀 + 벌 + 불가]

■ 친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 + 권리 + 부부 + 같이 + 하다 + 원칙]

■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이혼, 인지 등의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 부모 + 생각 + 어긋나다 + 이혼 + 자식 + 인정 + 소송 + 때]

[부모 + 쌍방 + 말기다 + 정하다 + 필요]

■ 협의이혼, 임의인지의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지정하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

[합의 + 이혼 + 자녀 + 인정 + 등록 + 때]

[부모 + 협의 + 권리 + 말기다(의문형) + 합의]

[만약 + 합의 + 안되다 + 때 + 판사 + 결정 + 말기다]

■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 + 이혼 + 결혼 + 취소 + 자녀 + 인정 + 소송 + 때]

[판사 + 스스로 + 누구 + 부모 + 권리 + 사람 + 정하다]

- 일단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 + 권리 + 담당 + 사람 + 결정 + 완료 + 후]

[자녀 + 행복 + 이익 + 위해]

[4 + (한자)촌 + 까지 + 친척 + 신청 + (쉬고) + 판사 + 부모 + 권리 + 사람 + 변경 + 가능하다]

-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에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부모 + 권리 + 사람 + 정하다 + 변경 + 위하여]

[조정 + 합의 + 절차 + 먼저 + 진행 + 필수]

▶ 가사절차 설명 : 양육자의 지정

- 이혼, 혼인취소, 인지를 하는 경우 부부는 협의하여 양육자를 결정하고, 양육비용과 면접교섭권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혼 + 결혼 + 취소 + 결혼 + 외 + 다른 + 아기 + 출생]

[키우다 + 누가(의문형) + 부부 + 의논 + 합의 + 자녀 + 키우다 + 누구 + 결정 + 맡기다]

[키우다 + 돈 + 만나다 + 권리 + 키우다 + 여러 가지 + 협의 + 정하다]



영상보기
(II-3-8-2)

- 이에 대해 협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결정합니다.

[만약 + 합의 + 안되다 + 판사 + 재량껏 + 아니면 + 당사자 + 신청 + 결정]

- 양육자의 지정은 이혼 등을 하는 부모 사이에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보호 양육하는 사람을 협의 또는 재판으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키우다 + 사람 + 결정]

[이혼 + 부모 + 중(가운데) + 나이 아직 + 자녀 + 보호 + 키우다 + 사람 + 누구(의문형)]

[합의 + 아니면 + 재판 + 결정 + 절차]

양육자가 지정된 후에도 다른 사정이 생기면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키우다 + 사람 + 결정 + 후 + 특별 + 상황 + 발생]

[다시 + 합의 + 아니면 + 다시 + 재판 + 변경 + 가능]

양육자는 친권자와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키우다 + 사람 + 그것 + 부모 + 권리 + 사람 + 다르게 + 결정 + 가능]

그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칩니다.

[키우다 + 방식 + 결정 + 빼다 + 나머지 + 부모 + 권리 + 가능 + 그것 + 법률 + 전문가 + 문의 + 필요]



가사절차 설명 : 양육비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키우다 + 돈 + 나이 아직 + 자녀 + 키우다 + 돈]



영상보기
(II-3-8-3)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 + 함께 + 나이 아직 + 자녀 + 키우다 + 책임 + 때문에]

[돈 + 부모 + 함께 + 책임 + 필수]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용 부담에 관하여 협의하지 못한 경우, 양육하는 부모는 다른 부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 자녀 + 키우다 + 돈 + 합의 + 안 되다(여러번 강조)]

[아버지 + 키우다 + 돈 + 받다 + 법 + 신청 + 요청 + 가능 + 아버지 + 키우다 + 마찬가지로]

장래 양육비 뿐 아니라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미래 + 필요한 + 돈 + 과거 + 아직 + 돈 + 같이 + 합치다 + 받다 + 요청 + 가능]

■ 양육하는 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부모 양쪽을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 아니다 + 사람 + 아이 + 키우다 + 때]

[가정법원 + 부모 + 키우다 + 돈 + 요구 + 소송 + 가능]

■ 부모의 청구가 없더라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 + 청구 + 없다 + (지화)도]

[판사 + 스스로 + 키우다 + 돈 + 지급 + 정하다 + 가능]

■ 양육비청구에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키우다 + 돈 + 청구 + 조정 + 합의 + 절차 + 먼저 + 진행 + 필수]

■ 양육비지급에 관한 판결이나 조서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키우다 + 돈 + 주다 + 선언 + 서류 + 무시하고 + 상대방 + 키우다 + 돈 + 지급 + 거부 + ~면]

[키우다 + 돈 + 주다 + 선언 + 서류 + 증거 + 권리 + 강제 + 주다 + 요청 + 가능]

■ 또한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과태료, 또는 감치명령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 + 실천 + 명령 + 신청 + 상대방 + 게으르다 + 돈 + 그리고 + 임시 + 잡아오다 + 가두다 + 가능]

■ 법률에 의하여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도 가능합니다.

[또 + 법 + 내용 + 등록 + 운전 + 자격 + 정지 + 외국+ 비행기(바깥방향) + 금지 + 이름 + 공개 + 가능]



가사절차 설명 : 면접교섭

이혼, 혼인취소, 인지로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와 미성년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면접교섭이라고 합니다.

[만나다 + 연락하다 + 의미 + 무엇]

[이혼 + 결혼 + 취소 + 여러 가지 + 원인 + 키우다 + 말지 않다 + 사람 + 아이 + 연락 + 만나다(반복) + 언제(반복) + 엄마, 아빠 + 조울]



영상보기
(II-3-8-4)

면접교섭의 방법, 횟수 등에 대하여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결정합니다.

[안 되다 + 판사 + 신청(안쪽으로) + 재량껏 + 결정 + 만나다 + 연락하다 + 권한 + 부모 + 자연적으로 + 자녀 + 원하면 + 법원 + 신청 + 가능]

부모 뿐만 아니라 자녀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 + 부모 + 보고 싶다 + 만나다 + 권한 + 소송 + 가능]

조부모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 할머니 + 특별 + 허락 + 청구 + 가능]

면접교섭권은 당사자의 협의로는 전면적으로 배제될 수 없고, 심각한 아동학대 등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제한하거나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나다 + 연락하다 + 권리 + 부부 + 합의 + 자녀 + 완전 + 끊다(약하게) + 못하다]

[자녀 + 학대 + 심하다 + 발생하다 + 자녀 + 행복 + 이익 + 목적]

[재판 + 신청 + (재판 위치에서)재량껏 + 제한 + 끊다 + 바꾸다 + 가능]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처분을 통하여 가정법원 내의 면접교섭센터에서 가사조사관 등의 주도로 시범 면접교섭을 실시해본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남 + 협의 + 매끄럽다 + 아직 + 때]

[판사 + 미리 + 결정 + 요청]

[가정법원 + 안에 + 만나다 + 협의 + 관리 + 센터 + 조사 + 사람 + 그림자 + 정치 + 시험 + 해보다 + 후에 + 최종 + 결정]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키우다 + 사람 + 만나다 + 연락하다 + 권리 + 거부]

[실천 + 명령 + 그냥(별 거 아니라듯이 여러번) + 게으르다 + 돈 + 통보 + 가능]

▶ 가사절차 설명 : 친권의 상실 등 청구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 + 둘 중 + 하나 + 권리 + 악용 + 자녀 + 행복 + 이익 + 방해 + 다치다 + 위험 + 때]

[판사 + 부모 + 권리 + 박탈 + 또 + 정지 + 선언 + 가능]



영상보기
(II-3-8-5)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심하게 폭행하거나 유기하는 등 학대를 한 경우에 친권상실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다 + 부모 + 때리다 + 방관 + 괴롭히다 + 때 + 부모 + 권리 + 박탈 + 명령 + 가능]

친권의 상실이란 친권 자체를 전부 박탈하는 것입니다.

[부모 + 권리 + 사라지다 + 같다 + 부모 + 모두 + 권리 + 박탈]

친권의 일시 정지란 친권자가 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 + 권리 + 잠깐 + 정지 + 그것]

[부모 + 권리 + 가지다 + 있어도 + 잠깐 + 정지]

2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 2년 + 정지 + 선언]

[지숫자]1번 + 기간 + 늘리다 + 신청 + 가능]

■ **친권의 일부 제한이란 친권 중 거소지정권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동의권, 그 밖에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부모 + 권리 + 일부 + 제한 + 그것]

[자녀 + 집 + 지정 + 병 + 바꾸다 + 동의 + 권리 + 몸 + 정보 + 결정 + 여러 가지 + 특이사항 + 만 + 제한]

■ **친권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된 부모도 부모 내지 직계혈족으로서의 권리는 유지되므로, 부양 및 상속에 관한 권리·의무는 가집니다.**

[부모 + 권리 + 상실 + 잠깐 + 정지 + 일부분 + 제한 + 하여도]

[가까운 + 핏줄 + 친척 + 권리 + 여전하다]

[때문에 + 돌보다 + 재산 + 물려주다 + 권리 + 있다]

■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 친권상실 또는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 선고를 받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부모 + 모두 + 부모 + 권리 + 박탈 + 또 + 잠깐 + 정지 + 또 + 일부 + 제한 + 통지 + 받다]

[판사 + 재량껏 + 나이 아직 + 뒤 + 도와주다 + 사람 + 선정]

■ **친권의 상실 등의 원인이 소멸하면 친권자 본인 등은 실권 회복의 청구를 하여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 + 권리 + 박탈 + 원인 + 사라지다]

[회복 + 요청 + 원래대로 + 복구 + 가능]



가사절차 설명 :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 청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가정법원은 친권자에게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 + 권리 + 사람 + 불법 + 관리 + 자연스럽게 + 자녀 + 돈 + 불안하다]

[판사 + 부모 + 권리 + 사람 + 법 + 권리 + 행동 + 대체 + 권리 + 재산 + 관리 + 권리 + 박탈 + 선언 + 가능]



영상보기
(II-3-8-6)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 등의 청구와 달리 자녀 자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녀 + 가까운 + 친척 + 재판 + 조사 + 사람 + 시, 군, 구청장 + 요청 + 가능]

[자녀 + 부모 + 권리 + 박탈 + 여러 가지 + 요청 + 가능]

[하지만 + 자녀 + 본인(당사자) + 박탈 + 요청 + 불가]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을 박탈하므로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친권을 유지합니다.

[법 + 권리 + 행동 + 대체 + 권리 + 재산 + 관리 + 권리 + 박탈 + 만]

[때문에 + 자녀 + 계속 + 부모 + 역할 + 가능]

Ⅰ 친생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혼인을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혼인 중의 자'와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의 자'가 있습니다.

[결혼 + 했다 + 안했다 + 상관없다 + 부모 + 진짜 + 핏줄 + 자녀]



영상보기
(Ⅱ-3-8-7)



Ⅰ 친권자

미성년자를 보호, 양육하고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의무(친권)를 행사하는 사람. 보통 부모가 친권자가 되지만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나이 아직 + 아이 + 보호 + 키우다 + 돈 + 관리 + 권리 + 책임 + 사람]



영상보기
(Ⅱ-3-8-8)



4. 후견 관련 절차 및 법률용어

▶ 가사절차 설명 : 미성년후견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나이 아직 + 아이 + 부모 + 없다 + 부모 + 권리 + 못하다 + 때]

[따로 + 나이 아직 + 뒤 + 도와주다 + 사람 + 필요]



영상보기
(II-4-1)

- 미성년후견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때에 개시됩니다.

[부모 + 죽다 + ~전 + 말 + 나이 아직 + 뒤 + 도와주다 + 사람 + 지정 + 말하다]

[또 + 판사 + 재량껏 + 권리 + 또 + 요청 + 받다 + 나이 아직 + 뒤 + 도와주다 + 사람 + 선택 + 맡기다 + 때]

[열다 + 진행]

- 미성년후견인은 1명만 둘 수 있습니다. 법인은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이 아직 + 뒤 + 도와주다 + 사람 + 1명 + 만 + 가능]

[법 + 인정 + 단체 + 나이 아직 + 뒤 + 도와주다 + 사람 + 불가]

▶ 가사절차 설명 : 성년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 + 장애 + 늙다 + 이외 + 이유 + 머리 + 한계 + 서류 + 능력 + 없다 + 계속 + 성인]

[가정법원 + 생각 + 불가능 + 뒤 + 도와주다 + 사람 + 지정 + 재판 + 신청 + 가능]



영상보기
(II-4-2)

-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판사 + 생각 + 불가능 + 뒤 + 도와주다 + 사람 + 심리 + 때]

[판사 + 재량껏 + 생각 + 불가능 + 뒤 + 도와주다 + 사람 + 말기다]

■ 복수의 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 이상 + 생각 + 불가능 + 뒤 + 도와주다 + 사람 + 가능]

[또 + 법 + 인정 + 단체 + 가능]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생각 + 불가능 + 뒤 + 도와주다 + 사람]

[생각 + 불가능 + 성인 + 법 + 대신 + 사람]

[생각 + 불가능 + 성인 + 법 + 권리 + 행동 + 취소 + 가능]

▶ 기사절차 설명 : 한정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 + 장애 + 늙다 + 이외 + 이유 + 머리 + 한계 + 서류 + 능력 + 부족 + 성인]

[가정법원 + 생각 + 부족 + 뒤 + 도와주다 + 요청 + 재판 + 신청 + 가능]



영상보기
(II-4-3)

■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판사 + 생각 + 부족 + 뒤 + 도와주다 + 심리 + 때]

[판사 + 재량껏 + 생각 + 부족 + 뒤 + 도와주다 + 사람 + 말기다 + 가능]

■ 복수의 한정후견인을 둘 수 있고, 법인도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 이상 + 생각 + 부족 + 뒤 + 도와주다 + 사람 + 가능]

[법 + 인정 + 단체 + 가능]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 + 생각 + 부족 + 성인 + 생각 + 부족 + 뒤 + 도와주다 + 사람 + 동의 + 필요 + 행동 + 범위 + 정하다]

한정후견인은 별도로 대리권 수여 심판을 받아야만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생각 + 부족 + 뒤 + 도와주다 + 사람 + 따로 + 대리 + 권리 + 받다 + 심리 + 재판 + 필수]

[생각 + 부족 + 성인 + 대리 + 가능]

▶ 기사절차 설명 :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 + 장애 + 늙다 + 이외 + 이유 + 머리 + 한계 + 특수 + 상황 + 지원 + 필요 + 성인 + 대해서]

[가정법원 + 특정 + 뒤 + 도와주다 + 사람 + 요청 + 재판 + 신청 + 가능]



영상보기
(II-4-4)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합니다.

[판사 + 특정 + 뒤 + 도와주다 + 사람 + 필요 + 기간 + 또 + 임무 + 범위 + 정하다 + 특정 + 뒤 + 도와주다 + 사람 + 요청 + 재판]

특정후견개시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특정 + 뒤 + 도와주다 + 사람 + 요청 + 재판 + 당사자 + 반대 + 있다 + 불가]

가정법원이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판사 + 특정 + 뒤 + 도와주다 + 사람 + 요청 + 심리 + 있다 + 때]

[판사 + 재량껏 + 권리 + 특정 + 뒤 + 도와주다 + 사람 + 맡기다 + 가능]

복수의 특정후견인을 둘 수 있고, 법인도 특정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 이상 + 특정 + 뒤 + 도와주다 + 사람 + 가능]

[또 + 법 + 인정 + 단체 + 특정 + 뒤 + 도와주다 + 사람 + 가능]

특정후견인은 별도로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대리권 수여 심판을 받은 경우에만 그에 관하여 피특정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 뒤 + 도와주다 + 사람]

[따로 + 기간 + 또 + 행동 + 범위 + 정하다 + 대리 + 권리 + 심리 + 재판 + 필수]

[특정 + 상황 + 대신 + 해결 + 가능]



가사절차 설명 : 임의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있는 성인은 자신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병 + 장애 + 늙다 + 이외 + 이유 + 자연스럽게 + 머리 + 한계 + 부족 + 상황 + 지원 + 필요 + 성인 + 대해서 + 대비]

[스스로 + 지원자 + 구인 + 계약 + 가능]



영상보기
(II-4-5)

후견계약이 공정증서로 체결되고 후견등기부에 등기되면,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임의후견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지원 + 계약 + 공(公) + 직인 + 서류 + 맺다 + 등본 + 등록 + 완료]

[판사 + 당사자 + 남편, 아내 + 4촌 + 까지 + 친척 + 임시 + 뒤 + 도와주다 + 사람 + 그림자 + 감시 + 사람 + 구인 + 맡기다]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그때부터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시 + 뒤 + 도와주다 + 사람 + 감시 + 사람 + 구인 + 맡기다 + 완료 + 날 + ~부터]

[지원 + 활동 + 계약 + 법 + 시작]



가사절차 설명 : 후견인 선임·변경

■ 후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뒤 + 지원하다 + 모든 + 사람 + 이유 + 확실하다]

[판사 + 허락 + 그만두다 + 가능]



영상보기
(II-4-6)

■ 이때 후견인은 선임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 뒤 + 도와주다 + 사람 + 그만두다 + 요청 + 바로 + 교체 + 맡기다 + 요청 + 필수]

■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피후견인,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판사 + 서둘다 + 사람 + 행복 + 이익 + 위하다]

[모두 + 사람 + 뒤 + 도와주다 + 변경 + 필요 + 인정]

[재량껏 + 아니면 + 서둘다 + 사람 + 친척 + 요청 + 변경 + 가능]

■ 후견감독인에 대해서도 위와 같습니다.

[사람 + 뒤 + 도와주다 + 감독 + 사람 + 위 내용 + 같다]

■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다른 후견과는 달리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언제든지 후견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임시 + 뒤 + 도와주다 + 오직]

[임시 + 뒤 + 도와주다 + 사람 + 감독 + 사람 + 오다 + ~전에 + 언제든지 + 빼다 + 가능]

■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임시 + 뒤 + 도와주다 + 사람 + 감독 + 사람 + 오다 + 후]

[이유 + 있다]

[판사 + 허락 + 빼다 + 가능]

■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에게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임시 + 뒤 + 도와주다 + 사람 + 감독 + 사람 + 뽑다 + 후]

[임시 + 뒤 + 도와주다 + 사람 + 임무 + 맡기다 + 그것 + 불법 + 이유 + 있다]

[판사 + 임시 + 뒤 + 도와주다 + 사람 + 벗다(맡기다 수어를 다시 위로) + 가능]

▶ 기사절차 설명 : 후견감독인

■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후견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과 피후견인사이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영상보기
(II-4-7)

[사람 + 뒤 + 도와주다 + 감독 + 사람]

[사람 + 뒤 + 도와주다 + 사람 + 권리 + 이용 + 방지 + 지원 + 업무 + 관리]

[또 + 사람 + 뒤 + 도와주다 + 사람 + 서툴다 + 사람 + 사이 + 갈등 + 있다 + 서툴다 + 사람 + 대신 + 대화]

■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판사 + 필요하다 + 때 + 재량껏 + 또 + 요청 + 있다]

[사람 + 뒤 + 도와주다 + 감독 + 사람 + 맡기다 + 가능]

■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 아직 + 뒤 + 도와주다 + 사람 + 지정 + 가능 + 사람]

[죽다 + ~전 + 말 + 나이 아직 + 보호자 + 감독 + 사람 + 지정 + 가능]

■ 후견감독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 + 뒤 + 도와주다 + 감독 + 사람 + 1명 이상 +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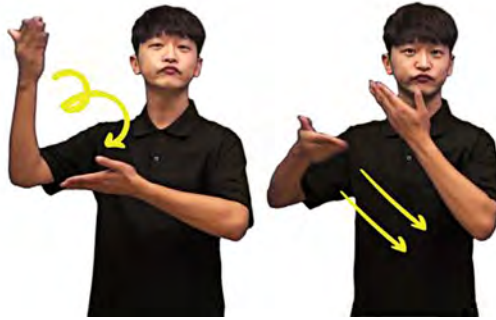
[법 + 인정 + 단체 + 가능]

III

상속관계 등 관련 절차 및 법률용어에 관한 수어



[부모]



[물려받다]



[재산]

1. 상속 관련 절차 및 법률용어

1) 상속



가사절차 설명

■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상속이 개시됩니다.

[주다 + 사람 + 죽다 + 재산 + 물려주다 + 시작 + 행동]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상속이 개시됩니다.

[사라지다 + 확실하다 + 사람]



영상보기
(III-1-1-1)

[죽다 + 사라지다 + 기간 + 끝나다 + 때]

[재산 + 물려주다 + 시작 + 행동]

■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인 채무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주다 + 사람 + 모으다 + 재산 + 또 + 빛]

[재산 + 물려주다 + 시작 + 행동 + 때 + 부터]

[받다 + 사람 + 모두 + 물려받다]



관련용어

■ 상속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법률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되는 것.

[부모 + 물려받다 + 재산]



영상보기
(Ⅲ-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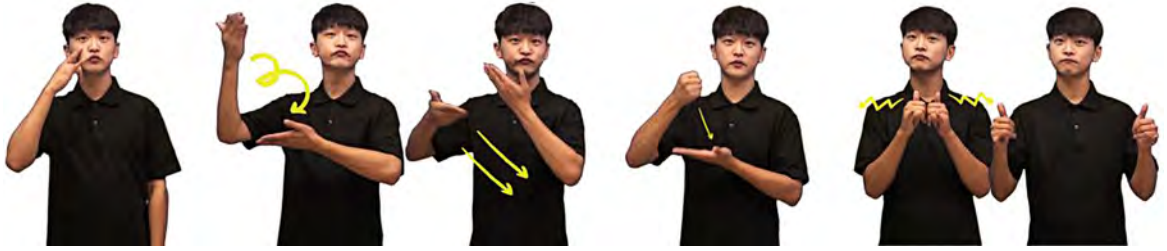
■ 상속인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

[부모 + 물려받다 + 재산 + 사람]



영상보기
(Ⅲ-1-1-3)



Ⅰ 피상속인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아 자신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의 재산(상속재산)을 법률에 따라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사람.

[재산 + 주다 + 사람]



영상보기
(Ⅲ-1-1-4)



2) 상속인

▶ 가사절차 설명 : 상속인

Ⅰ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상속개시 당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태어난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인으로 봅니다.

[재산 + 받다 + 사람 + 살아있다 + 필수 + 배다 + 아기 + 출생 + 포함]



영상보기
(Ⅲ-1-2-1)

Ⅱ 상속인은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법 + 인정 + 가족 + 관계 + 필수]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나 방식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의 양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 + 등록 + 아직 + 아내 + 등록 + 아직 + (왼쪽)사람 + (오른쪽)자녀 + (오른쪽에서 왼쪽 사람이 있는 데로) + 이동 + 자녀]

[재산 + 물려받다 + 불가]

가사절차 설명 : 상속결격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속인이 될 자격을 잃는 것을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상속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 실수 + 잘못 + 때문에 + 재산 + 자격 + 미달]



영상보기
(III-1-2-2)

첫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때.

[첫째 + 일부러 + 물려받다 + 재산 + 자녀 + 손자녀 + 아내 + 형제자매 + 부모 + 위 + 친척 + 죽이다 + 몰래(쥐도 새도 모르게)]

둘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둘째 + 일부러 + 물려받다 + 재산 + 자녀 + 손자녀 + 아내 + 형제자매 + 부모 + 위 + 친척 + 공격(여러번) + 상처 + 결국 + 사망]

셋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때.

[셋째 + 재산 + 주다 + 사람 + 사기 + 협박 + 방해 + 받아내다]

넷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때.

[넷째 + 죽다 + ~전 + 말 + 내용 + 서류 + 조작 + 없애다 + 숨기다]



가사절차 설명 : 상속순위

■ 상속에 있어서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재산 + 물려받다 + 사람 + 순위 + 설명]



영상보기
(III-1-2-3)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 재산 + 주다 + 사람(중심) + 다음 + 자녀 + 또 + 아내 + 같이 + 받다]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이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있으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2순위 + 만약 + 자녀 + 없다 + 아내 + 부모 + 같이 + 받다 + 만약 + 자녀 + 부모 + 모두 + 없다 + 아내 + 혼자 + 물려받다]

■ 3순위, 피상속인의 직계혈족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 할머니, 할아버지 + 아내 + 다 + 없다 + 형제, 자매 + 함께 + 물려받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가장 가까운 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혈족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 재산 + 주다 + 사람(중심) + 다음 + 자매형제 + 4촌(寸) + 까지 + 받다 + 대등하다 + 친척 + 권리 + (전부)똑같다]



가사절차 설명 : 대습상속

■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그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상보기
(III-1-2-4)

[대신 + 받다 + 상속 + 의미 + (뒤)]

[재산 + 물려받다 + 사람 + 물려주다 + 시작 전 + 죽다 + 물려받다 + 조건 + 결격(5자 손가락 다 펴놓은 상태에서 하나 접기) + 대신 + 받다 + 누구 + 핏줄 + 후손 + 배우자]

원래 상속인이 될 사망자 또는 결격자를 피대습자, 대습상속받는 사람을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원래 + 받다 + 사람 + 사망 + 자격 + 미달 + 그것 + (지화)피대습자]

[대신 + 받다 + (지화)대습상속인]

3) 상속분

가사절차 설명 : 상속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법정상속분에 따릅니다.

[주다 + 사람 + 죽다 + ~전 + 말 + 물려받다 + 재산 + 비율 + 정하다 + 없다 + 때]

[법 + 정하다 + 비율 + 선언 + 순종 + 내용 + 설명]



영상보기
(III-1-3-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 그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대등하다 + 받다 + 사람 + 1명 + 이상 + 때 + 비율 + 동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주다 + 사람 + 핏줄 + 후손 + 주다 + 사람 + 잇다(위쪽 방향) + 친척 + 같이 받다 + 재산 + 주다 + 때]

[주다 + 사람 + 남편, 아내 + 재산 + 50% + 더 + 받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대신 + 물려받다 + 재산 + 사람 + 비율]

[곤(등호) + 물려받다 + 재산 + 진행 중 + 죽다 + 사람 + 옮기다(이관: 오른손을 주먹모양으로 잡아서 왼쪽 손목에 대고 같이 옮기다 비슷하게 표현) + 비율]

■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분을 정합니다.

[대신 + 물려받다 + 1명 + 이상]

[재산 + 물려받다 + 진행 + 중(가운데) + 사망 + 사람 + 옮기다(이관) + 법 + 정하다 + 비율 + 나누다]

■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을 받아 특별수익이 있는 공동상속인은 원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액을 뺀 나머지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같이 + 받다 + 사람]

[재산 + 무료 + 주다 + 또 + 죽다 + ~전에 + 말 + 무료 + 주다 + 재산 + 그것 + 원인 + 특수 + 이익 + 있다]

[받기로 + 정한 + 재산 + 안에 + 특수 + 이익 + 빼다 + 그것만 + 받다 + 가능]

■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 특수 + 이익 + 물려받다 + 재산 + 비율 + 초과]

[반환 + 주다 + 책임 + 필요 + 없다]

▶ 가사절차 설명 : 기여분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 + 주다 + 사람 + 돌보다 + 재산 + 부풀리다 + 협조 + 수고]

[대등한 + 권리 + 다 + 똑같이 + 받다 + 나 + 수고 + 인정 + 비율 + 주장 + 가능]

■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영상보기
(III-1-3-2)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수고 + 인정 + 비율 + 같이 + 재산 + 물려받다 + 사람 + 그림자 + 협의 + 결정 + 가능]

[협의 + 아직 + 협의 + 어렵다 + 수고 + 사람 + 소송 + 후 + 판사 + 선언]

■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물려받다 + 재산 + 시작 + 때 + 재산 + 주다 + 사람 + 재산 + 총액 + 수고 + 인정 + 비율 + 빼다]

[나머지 + 법 + 정하다 + 비율 + 맞게 + 나누다]

[각각 + 물려받다 + 재산 + 비율]

■ 이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물려받다 + 재산 + 비율 + 수고 + 인정 + 비율 + 합산]

[수고 + 사람 + 물려받다 + 재산 + 비율 + 인정]



관련용어

■ 상속분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하는 경우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각 상속인이 승계할 권리 · 의무의 비율.

[물려받다 + 재산 + 비율]



영상보기
(III-1-3-3)



특별수익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증여를 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

[특수 + 이익]



영상보기
(III-1-3-4)



기여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그 기여한 만큼 원래 상속분에 가산하여 주는 것.

[수고 + 인정 + 비율]



영상보기
(III-1-3-5)



4)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가사절차 설명

- 공통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까지 상속재산을 상속분대로 공유합니다.

[물려받다 + 재산 + 사람 + 다 + 모이다 + (쉬고) + 물려받다 + 재산 + 나누다 + ~전까지]
[나누다 + 비율 + 대로 + 모두 + 공유]



영상보기
(III-1-4-1)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물려받다 + 재산 + 분할]
[나누다 + 비율 + 맞게(양손 날 세워 붙임) + 나누다 + 절차]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그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닌 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전원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 + 주다 + 사람]
[죽다 + ~전 + 말 + 나누는 + 방법 + 정하다]
[또 + 나누다 + 금지]
[없다 + 때]
[받다 + 사람 + 언제든지 + 전부 + 협의 + 나누다 + 받다 + 가능]

-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모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 아직 + 일 때]
[받다 + 사람 + 그림자 + 중 + 한 명 + 또 + 1명 이상 + 나머지 + 그림자 + 상대로]
[가정법원 + 재산 + 나누다 + 심리 + 재판 + 신청 + 가능]

-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재산 + 나누다 + 심리재판 + 신청 + 그것]

[조정 + 합의 + 절차 + 먼저 + 진행 + 필수]

■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각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분할된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재산 + 나누다 + 심리재판 + 선언 + 확정]

[주다 + 사람 + 사망 + 때 + 나누다 + 재산 + 이것 + 상속 + 인정]

5) 상속회복청구

▶ 가사절차 설명

■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의 외형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산 + 받다 + 권리 + 없다(의문형)]

[겉모습 + 정상 + 또 + 나 + 재산 + 받을 수 + 있다 + 재산 + 가져가다 + 법 + 방해 + 사람]

■ 예를 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허위 기재된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무효혼인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다]

[등본 + 자녀 + 등록 + 가짜]

[또 + 씌 + 마음대로 + (오른쪽)전부 + (왼쪽)일부 + 가지다 + 사람]

[또 + 결혼 + (지화)무 + 상대방 + 그림자]

■ 상속인 또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 + 받다 + 사람 + 또 + 무료 + 주다 + 재산 + 모두 + 있다 + 사람]



영상보기
(III-1-5-1)

[가짜 + 상대로 + 재산 + 주다 + 사람 + 거주지 + 범위 + 보호 + 법원 + 재산 + 받다 + 가능 + 신청 + 가능]

■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제기 가능합니다.

[재산 + 받다 + 방해 + 알았다 + 날부터 + 3년]

[또 + 방해 + 받았다 + 날부터 + 10년 + 안에 + 소송 + 가능]

■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민사사건이므로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 + 받다 + 가능 + 신청 + 사건 + 개인/사람 + 법 + 사건 + 맞다]

[때문에 + (지화)민사 + 법원 + 소송 + 원칙]

6) 상속의 방식



가사절차 설명 : 단순승인

■ 상속의 방식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가 있습니다.

[재산 + 받다 + 방식 + (지숫자)3 + 개 + 있다]

[받다 + 무조건 + 인정 + 받다 + 한정 + 인정 + 포기]



영상보기
(III-1-6-1)

■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승인하는 상속방식입니다.

[받다 + 무조건 + 인정 + 그것]

[재산 + 주다 + 사람 + 가지고 + 있다 + 권리 + 의무 + 그대로 + (오른손 집게 모양으로 해서 왼쪽 손목에 대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옮기다) + 무조건 + 승인 + 방식]

■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제한 + 없다 + 모든 + 권리 + 빗 + 받다 + 필수]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받다 + 무조건 + 인정 + 마찬가지로 + 행동 + 3]

첫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첫째 + 물려받다 + 재산 + 사람 + 재산 + 처분]

둘째,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때.

[둘째 + 재산 + 주다 + 사람 + 재산 + 받다 + 시작 + 알았다 + 날부터 + (지숫자)3 + 개월 + 최대(채우다) + 받다 + 한정 + 인정 + 물려받다 + 재산 + 포기 + 말 + 없다]

셋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숨겨두거나,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셋째 + 재산 + 주다 + 사람 + 받다 + 한정 + 인정 + 또 + 포기 + 후 + 물려받다 + 재산 + 감추다 + 쓰다(강조) + 일부러 + 등록 + 누락(결여)]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면 그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받다 + 무조건 + 인정 + 하다 + 후에]

[받다 + 한정 + 인정 + 또 + 포기 + 효과 + 없다]

▶ 기사절차 설명 :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의한 채무를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방식입니다.

[받다 + 한정 + 인정 + 의미]

[물려받다 + 돈 + 제한 + 범위 + 안에 + 빚 + 갚다 + 승인 + 방식]



영상보기
(III-1-6-2)

■ 상속된 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 빚 + 얼마(의문형) + 물려받다 + 돈 + 초과 + 본인 + 돈 + 갚다 + 책임 + 없다]

■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받다 + 한정 + 인정]

[물려받다 + 재산 + 시작 + 사실 + 알다 + 부터 + (지숫자)3개월 + 최대(채우다)]

[재산 + 주다 + 사람 + 거주지 + 범위 + 법원 + 신고 + 필수]

▶ 기사절차 설명 : 상속포기

■ 상속의 포기란 상속의 효과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상속방식입니다.

[물려받다 + 재산 + 빚 + 전부 + 포기]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기여분이나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려받다 + 재산 + 포기 + 사람]

[물려받다 + 재산 + 시작 + 부터 + 권리 + 제외]

[수고 + 인정 + 퍼센트 + 법 + 정하다 + 퍼센트 + 돈 요구하다 + 불가]

■ 상속포기 절차도 한정승인과 동일하게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려받다 + 재산 + 포기 + 받다 + 한정 + 인정 + 같다]

[(지숫자)3개월 + 최대(채우다) + 재산 + 주다 + 사람 + 거주지 + 범위 + 가정법원 + 신청 + 필수]



영상보기
(III-1-6-3)

2. 유언 관련 절차 및 법률용어

1) 유언



가사절차 설명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이상인 사람은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 17세 + 이상 + 보통 + 사람]

[죽다 + ~전 + 말 + 가능 + 또 + 후에 + 변경 + 되돌리다 + 가능]



영상보기
(III-2-1-1)

■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 + 불가능 + 성인]

[생각 + 판단 + 능력 + 부활 + 확인]

[죽다 + ~전 + 말 + 가능]

■ 이때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몸 + 회복 + 상태 + 진찰 + 선생님 + 확인 + 문서 + 작성 + 이름 + 사인 + 도장 + 필수]

■ 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진 유언만이 효력이 있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죽다 + ~전 + 말 + 법 + 조건 + 부합하다 + 효력 + 인정]

[죽다 + ~전 + 말 + 효력 + 죽다 + 동시에 + 시작]

▶ 관련용어

1 유언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행위.

[죽다 + ~전 + 말]



영상보기
(III-2-1-2)



2) 유언의 방식

▶ 가사절차 설명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은 자필증서 · 녹음 · 공정증서 · 비밀증서 · 구수증서 5가지의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죽다 + ~전 + 말]

[조건 + 목록(프로그램) + 직접 + 쓰다 + 종이 + 증거]

[라디오/말 + 저장]

[공(公) + 직인 + 서류]

[내용 + 비밀 + 서류]

[말 + 종이 + 옮기다 + 5개만 + 인정]



영상보기
(III-2-2-1)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위 5개 + 방법 + 부적합하다]

[죽다 + ~전 + 말 + 남기다 + 사람 + 생각 + 진짜 + 맞다 + (지화)도 + 인정 + 무효]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장에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유언자의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직접 + 쓰다 + 종이 + 증거 + 그것]

[내용 + 연월일 + 주소 + 이름 + 직접 + 자필 + 도장 + 방식]

■ 타자기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이나 복사한 것은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 + 컴퓨터 + 또 + 복사 + 인정 + 불가]

▶ 가사절차 설명 : 녹음에 의한 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말한 것을 녹음장치로 녹음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라디오/말 + 저장 + 그것]

[증인 + 앞에 + 내용 + 이름 + 연월일 + 말하다]

[또 + 증인 + 내용 + 인정 + 본인 + 이름 + 말하다 + 저장 + 방식]



영상보기
(III-2-2-2)

▶ 가사절차 설명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의 참여하에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필기 ·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그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죽다 + ~전에 + 공(公) + 직인 + 서류 + 의미]

[증인 + 2명 + 참여 + 필수 + 변호사 + 앞에 + 내용 + 말하다 + 변호사 + 필기 + 읽다]



영상보기
(III-2-2-3)

[말하는 + 사람 + 증인 + 전부 + 필기 + 정확 + 확인 + 승인 + 후 + 각각 + 이름 + 작성 + 도장 + 방식]

▶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 + 법원 + 조사 + 인정 + 절차 + 필요 + 없다]

▶ 기사절차 설명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유언 증서를 작성한 후 봉투 등에 넣어 봉하여 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지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비밀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영상보기
(Ⅲ-2-2-4)

[죽다 + ~전 + 말 + 사람 + 직접 + 작성 + 이름 + 사인 + 봉투 + 봉하다 + 도장]

[2명 + 이상 + 증인 + 앞에 + 보여주다]

[봉투 + 앞에 + 날짜 + 기재]

[말하는 + 사람 + 증인 + 전부 + 각각 + 서명 + 도장 + 방식]

▶ 유언봉서는 그 표지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 앞에 + 기재 + 날짜 + 부터 + 5일 + 안에]

[법 + 전문가 + 또 + 가정 + 법원 + 제출]

[확정 + 날짜 + 도장 + 받다 + 필수]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이 있는 때에도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보아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것 + 지키다 + 아니다 + 도]

[죽다 + 가까운 + 종이 + 방식 + 같다 + 효력 + 인정]



가사절차 설명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등의 급박한 사유로 사망이 시간적으로 가까워 위의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증인 1명에게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전달하고, 전달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구수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영상보기
(III-2-2-5)

[그것 + 많이 + 아프다 + 여러가지 + 급하다 + 이유 + 사망 + 가깝다 + 말 + 유언 방법 5개 중 4개 불가능+ 때]

[2명 + 이상 + 증인 + 참여 + 필수]

[그 중 + 1명에게 + 말하다 + 그 1명 + 직접 + 작성 + 낭독]

[전부 + 내용 + 정확 + 확인 + 각자 + 이름 + 도장 + 방식]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증인 또는 상속인 등이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황 + 급하다 + 종료 + 후]

[증인 + 또는 + 재산 + 받다 + 사람 + 그림자 + 7일 + 안에 + 가정법원 + 조사 + 인정 + 신청 + 필수]

3) 유증



가사절차 설명

유언자는 자유롭게 유증을 할 수 있고, 유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습니다.

[죽다 + ~전 + 말 + 사람 + 누구 + 얼마 + 자유]

[또 + 무료 + 주다 + 재산 + 모두 + 무료 + 주다 + 재산 + 각각 + 결정 + 있다]



영상보기
(III-2-3-1)

사람, 법인 모두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 + 법 + 인정 + 단체 + 모두]

[죽다 + ~전에 + 말 + 무료 + 주다 + 재산 + 받다 + 가능]

■ 사람인 경우 유언자가 사망할 때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의 경우 생존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받다 + 사람 + 죽다 + ~전 + 말 + 사람 + 사망 + 까지 + 살아있다 + 필수]

[단 + 아기 + 받다 + 가능]

■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증을 실행할 의무 있는 사람을 유증의무자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죽다 + ~전 + 말 + 사람 + 죽다 + 때]

[물려받다 + 재산 + 사람 + 죽다 + ~전에 + 말 + 무료 + 주다 + 재산 + 책임 + 원칙]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증을 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유증이 이루어진 후 남은 재산만을 상속받습니다.

[죽다 + ~전 + 말 + 사람 + 사망 + 동시에]

[물려받다 + 재산 + 사람]

[죽다 + ~전에 + 말 + 무료 + 주다 + 재산 + 계산하다 + 후 + 남다 + 재산 + 받다]

▶ 관련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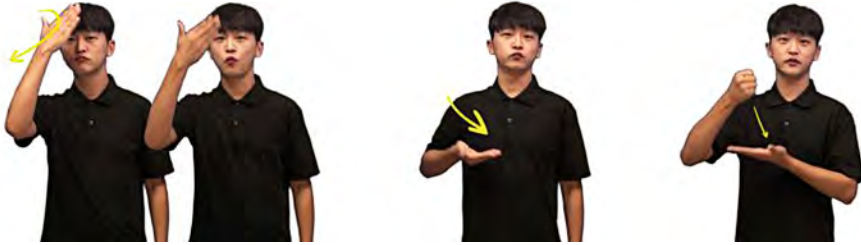
Ⅰ 유증

유언자가 유언으로 자기의 재산을 사후에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주는 행위.

[죽다 + ~전에 + 말 + 무료 + 주다 + 재산]



영상보기
(Ⅲ-2-3-2)



포괄유증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을 등기 또는 인도 없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유증.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무료 + 주다 + 재산 + 모두]



영상보기
(Ⅲ-2-3-3)



특정유증

특정된 재산(적극재산)을 승계하되, 유증의무자에 의한 별도의 재산이전행위가 필요한 유증.

[무료 + 주다 + 재산 + 각각 + 결정]



영상보기
(III-2-3-4)



4) 유언의 검인



가사절차 설명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한 후 유언검인조서를 작성하여 유언을 확정하는 것을 유언의 검인이라고 합니다.

[죽다 + ~전 + 말 + 조사 + 인정 + 의미]

[죽다 + ~전 + 말 + 방법 + 법원 + 부합하다 + 아니다 + 조사 + 확인 + 서류 + 작성 + 확정]



영상보기
(III-2-4-1)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이미 검인을 받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죽다 + -전에 + 공(公) + 직인 + 서류]

[또 + 말 + 종이 + 옮기다 + 서류 + 이미 + 법원 + 조사 + 인정 + 완료]

[따로 + 조사 + 필요 + 없다]

■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유언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죽다 + ~전 + 말 + 사람 + 죽다]

[죽다 + ~전에 + 말 + 증명 + 서류 + 또 + 라디오/말 + 저장 + 보관 + 또 + 발견 + 사람]

[그걸 + 죽다 + ~전에 + 말 + 사람 + 거주지 + 범위 + 가정법원 + 제출 + 조사 + 인정 + 청구 + 필수]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등 봉인된 유언증서는 개봉하여 검인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유언자의 상속인 등의 참여 아래 유언장을 개봉하고 이를 낭독 · 열람하고 조서를 작성합니다.

[법원 + 죽다 + ~전에 + 말 + 비밀 + 서류 + 여러가지 + 봉인]

[죽다 + ~전에 + 말 + 증명 + 서류 + 물려받다 + 재산 + 사람 + 그림자 + 전부 + 참여]

[개봉 + 읽다 + 보여주다 + 후]

[조사 + 인정 + 서류 + 작성]

■ 검인절차는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조사 + 인정 + 절차 + 죽다 + ~전 + 말 + 효력 + 있다 + 없다 + 판단 + 아니다]

[때문에 + 조사 + 인정 + 개봉 + 있다 + 없다 + 상관없다]

3. 유류분 관련 절차 및 법률용어

1) 유류분

▶ 기사절차 설명

■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유류분권리자입니다.

[재산 + 주다 + 사람 + 사망 + 때]

[재산 + 주다 + 사람 + 핏줄 +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다 + 남편, 아내 + 형제자매]

[법 + 정하다 + 물려받다 + 재산 + 일부 + 비율 + 받다+ 가능하다 + 권리 + 사람]

■ 태아(살아서 출생한 때)와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생 + 생명 + 살아있다 + 아이 + 또 + 대신 + 받다 + 사람]

[재산 + 일부 + 비율 + 가능]

■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법 + 정하다 + 재산 + 일부 + 비율]

[재산 + 주다 + 사람 + 기준]

[자녀 + 또 + 손자녀 + 또 + 배우자 + 2분의 1]

[또 + 부모 + 있다(위쪽방향) + 친척 + 형제자매 + 3분의1 + 원칙]



영상보기
(III-3-1-1)

▶ 관련용어

■ 유류분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 유류분을



영상보기
(III-3-1-2)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가지는 지위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재산 + 일부 + 비율]



2) 유류분반환청구



가사절차 설명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상속받는 재산이 유류분에 미달하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족액만큼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 일부 + 비율 + 받다 + 권리+ 사람]

[재산 + 주다 + 사람 + 재산 + 무료 + 주다 + 아니면 + 죽다 + ~전에 + 말 + 무료 + 주다 + 재산 + 원인 + 물려받다 + 재산 + 일부 + 비율 + 부족하다]

[죽다 + ~전에 + 말 + 재산 + 일부 + 무료 + 주다 + 아니면 + 재산 + 무료 + 주다 + 사람 + 부족하다 + 돈 + 반환 + 신청]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먼저 + 죽다 + ~전에 + 말 + 무료 + 주다 + 재산 + 받다 + 사람 + 반환 + 신청]

[받다 + 부족 + 생각]



영상보기
(III-3-2-1)

[재산 + 무료 + 주다 + 받다 + 사람 + 반환 + 신청]

■ 재판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재판을 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 가능 + 또 + 재판 + 없이 + 직접 + 상대방 + 받다 + 신청 + 가능]

■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에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 주다 + 사람 + 죽다 + 시작 + 알다 + 또 + 죽다 + ~전 + 죽다 + 날 + 재산 + 무료 + 주다 + 또 + 죽다 + ~전에 + 말 + 무료 + 주다 + 재산 + 있다 + 알다 + 반환 + 당연하다 + 알다 + 부터 + 1년 + 최대(채우다) + 반환 + 신청]

[또 + 알다 + 모르다 + 상관없다 + 10년 + 최대(채우다) + 재산 + 일부 + 비율 + 반환 + 신청 + 가능]

■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이므로 민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산 + 일부 + 비율 + 반환 + 신청 + 개인 + 법 + 사건 + 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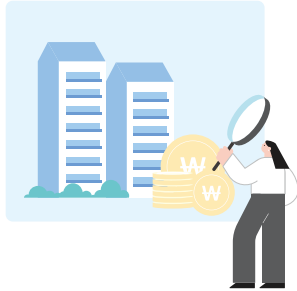
[때문에 + (지화)민사 + 법원 + 안에서 + 해결 + 원칙]

■ 다만 가사소송법이 개정되면 가정법원의 관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 가사 + 소송 + 법 + 개정 + 후 + 가정법원 + 담당 + 가능]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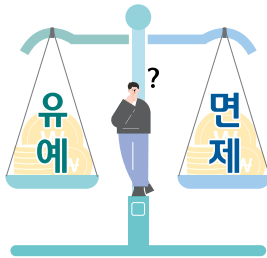
가사 관련 알아두면 좋은 제도



[재산명시·재산조회]



[이행강제]



[소송구조·절차구조]



[장애인 사법지원]

1.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 가사절차 설명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부양료 또는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명시명령이라고 합니다.



영상보기
(IV-1-1)

[재산 + 상황 + 등록 + 명령 + 뜻]

[이혼 + 원인 + 재산 + 나누다 + 또 + 키우다 + 돈 + 신청 + 사건 + 해결 + 필요]

[판사 + 재량껏 + 또 + 당사자 + 신청 + 따라]

[재산 + 상황 + 등록 + 목록 + 제출 + 명령 + 가능]

■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 + 상황 + 등록 + 명령 + 받다 + 사람]

[재산 + 목록 + 제출 + 거부 + 또 + 거짓말 + 제출]

[게으르다 + 돈 + 통지 + 가능]

■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 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할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종 기관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조회제도라고 합니다.

[재산 + 상황 + 등록 + 제출 + 절차 + 완료 + 불구하고]

[당사자 + 재산 + 목록 + 제출 + 거부]

[또 + 이미 + 받았다고 + 재산 + 목록 + 그것 + 해결 + 어렵다 + 때]

[판사 + 재량껏 + 또 + 당사자 + 신청 + 따르다]

[공공기관 + 가서 + 당사자 + 명의의 + 재산 + 조회 + 가능]

■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 + 조회 + 받은 + 기관 + 장]

[거짓 + 자료 + 제출 + 또 + 거부]

[게으르다 + 돈 + 통지 + 가능]

2. 그 밖의 이행강제방법

▶ 기사절차 설명 : 담보제공명령

-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 + 키우다 + 돈 + 정기적으로 + 지급 + 때]

[키우다 + 돈 + 책임 + 사람 + 서다 + 두다 + 제공 + 명령가능]



영상보기
(IV-2-1)

- 또한 양육비채무자가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 키우다 + 돈 + 책임 + 사람 + 정기적으로 + 돈 안주다 + 때]

[판사 + 키우다 + 돈 + 받다 + 사람 + 신청]

[서다 + 두다 + 제공 + 명령]

-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다 + 두다 + 아직 + 때]

[키우다 + 돈 + 전부 + 혹은 + 일부 + 한꺼번에 + 돈 + 주다 + 명령]

[계으르다 + 돈 + 통지 + 가능]

▶ 기사절차 설명 : 일시금 지급 명령

-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 + 키우다 + 돈 + 책임자 + 서다 + 두다 + 제공 + 명령]

[서다 + 두다 + 제출 + 아직]



영상보기
(IV-2-2)

[키우다 + 돈 + 받다 + 신청 + 따라]

[키우다 + 돈 + 전부 + 또 + 일부 + 지급 + 통지 + 명령 + 가능]

■ 양육비채무자가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 신청에 따라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키우다 + 돈 + 책임 + 사람]

[일시 + 내다 + 명령 + 받다]

[30일 + 안에 + 이유 + 없다 + 이행 + 아직]

[판사 + 키우다 + 돈 + 받는 + 사람 + 신청 + 따라]

[30일 + 안에 + 임시 + 잡아오다 + 가두다 + 명령 + 가능]

3. 소송구조·절차구조 제도

▶ 가사절차 설명

■ 소송구조·절차구조 제도는 가사소송이나 가사비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입을 유예(미루어 주는 것)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영상보기
(IV-3-1)

[소송 + 돈 + 도와주다 + 조사 + 돈 + 도와주다 + 법 + 방식]

[가정 + 재판 + 소송 + 공식 + 선언 + 또 + 참여 + 없다 + 가정 + 재판 + 안에 + 돈 + 없다 + 사람 + 대해서]

[판사 + 소송 + 돈 + 납부 + 연기하다 + 면제 + 양자택일 + 법 + 방식]

■ 가사소송에서는 소송구조 제도를, 가사비송에서는 절차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 + 재판 + 소송 + 공식 + 선언 + 안에서 + 소송 + 돈 + 도와주다 + 법 + 방식]

[또 + 참여 + 없다 + 가정 + 재판 + 안에서 + 조사 + 돈 + 도와주다 + 법 + 방식]

[이용 + 할 수 있다]

[본인 + 신청 + 있다 + 든지 + 판사 + 스스로 + 결정 + 가능]

■ 다만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단 + 소송 + 지다 + 확실하다 + ~하면]

[소송 + 도와주다 + 신청 + 거부 + 할 수 있다]

4. 장애인 사법지원

▶ 기사절차 설명

■ 장애인 사법지원은 소송이나 비송 절차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이 장애로 인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법원에서 필요한 편의제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 + 재판 + 지원 + 내용]

[불편하다 + 0점 + 목적 + 필요하다 + 여러 가지 + 서비스 + 주다]



영상보기
(IV-4-1)

■ 소송당사자가 아니라 증인, 감정인 등으로 참여하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 소송 + 본인 + 외 + 증인 + 감정 + 평가 + 사람 + 입장 + 참여하다 + 장애인 + 등록 + 관련없다 + 도움받다]

■ 사법지원의 내용은 장애의 유형에 따라 다양합니다.

[모든 + 장애인 + 여러 가지 + 지원 + 할 수 있다]

■ 특히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지원으로는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들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 청각 + 또 + 언어 + 장애인 + 지원 + 수어통역 + 문자 + 통역 + 두 개 + 있다]

[두 + 가지 + 모두 + 신청 + 가능]

■ 위 통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통역비용 + 국가 + 부담]

■ 장애인 사법지원을 원하는 경우 사법지원이 필요한 재판 기일이 있기 전에 장애인 사법지원 (편의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장애인 + 재판 + 지원받다 + 원하다]

[재판 + 날짜 + ~전 + 재판 + 진행 + 상관없다]

[장애인 + 재판 + 지원 + 신청 + 서류 + 작성 + 담당 + 재판부 + 제출하다]

■ 특히 통역을 원할 경우 장애인을 위한 통역 안내문에 답변을 적어 제출합니다.

[특히 + 통역 + 희망 + 때 + 종이 + 작성 + 제출 + 필요]

■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통역인으로 데리고 함께 온 사람을 수어통역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모든 사법지원 신청이 다 허가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수어통역사 + 둘이 + 들어가다]

[판사 + 허락 + 가능하다 + (쉬고) + 부적합하다 + 거부 + 가능하다]



※ 본인의 장애 상태를 법원에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질문지에
 답하여 앞면의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중 본인의 장애 유형과 관계있는 질문에만 답하시면 됩니다.

[시각장애 관련]

가. 시각장애로 인해 글자를 읽거나 사람을 알아보기 어렵다면,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까이서 보거나 돋보기를 이용하면 글자를 읽을 수 있다. 읽을 수 있는 글자의 크기는 ()이다.

① 법원(10p) ② 법원(20p)

③ 법원(30p) ④ 법원(40p)

2) 돋보기와 같은 보조도구를 이용해도 일반적으로 글자를 읽기 어렵지만, 확대인쇄물은 읽을 수 있다. ()

3) 점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4) 전자파일을 음성으로 바꿔 들을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거나, 가까운 곳에서 그러한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5) 시각장애로 인해 법원 청사 안팎을 다닐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

6) 기타(그 밖에 법원에 알리고 싶은 장애 관련 사정을 아래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관련]

나. 청각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다면,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상대화가 잘 들리지 않지만, 가까이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말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

2) 일상적인 말을 직접 듣기는 어렵지만, 보청기를 사용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말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

3) 소리를 듣기는 어렵지만, 수어를 이해할 수 있다. () 글자를 읽을 수 있다. ()
 구화를 배워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 4)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수어를 구사할 수 있다. () 글자를 써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 컴퓨터 자판을 쉽게 다룰 수 있다. ()
- 5) 수어로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 글자를 통해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 모두 필요하다. ()
- 6) 기타(그 밖에 법원에 알리고 싶은 장애 관련 사정을 아래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 관련]

다. 몸이 불편하여 재판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휠체어나 목발과 같은 보조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동에 큰 불편은 없다. ()
- 2)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적절한 보조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를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여기에 해당하면 구체적으로 원하는 보조기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 3)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도와줄 보조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면 구체적으로 원하는 도움의 내용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는 있지만 끌릴 힘이 없어 누군가가 계속 뒤에서 밀어주어야 한다는 등).
- 4) 몸이 불편해 오랜 시간 재판받기가 어려우므로, 재판이 길어질 경우 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면 구체적인 몸 상태를 쓰시기 바랍니다).
- 5) 몸이 불편해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므로 내 의사를 잘 전달해 줄 보조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면 보조인을 함께 데려올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보조인은 누구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타]

라. 위에서 설명한 내용 외에 재판을 받는 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거나 법원에 바라는 장애인 편의제공 서비스가 있다면 아래에 쓰시기 바랍니다.

용어 색인

ㄱ

가사비송 13
 가사비송절차 18
 가사소송 13
 가사소송절차 15
 가사절차 10
 가사조정 14
 가사조정절차 21
 가압류 28
 가정법원 12
 가족 32
 가처분 28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110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112
 기여도 48
 기여분 100, 102

ㄴ

녹음에 의한 유언 110

ㄷ

단순승인 105
 담보제공명령 122
 대습상속 98

ㄹ

면접교섭 82
 미성년 입양 65
 미성년후견 88

ㅁ

방계혈족 35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 8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111

ㅂ

사실혼 37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 55
 사전처분 26
 상속 94, 95
 상속결격 97
 상속분 99, 101
 상속순위 98
 상속인 95, 96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103
 상속포기 107
 상속회복청구 104
 성과 본의 변경 56
 성년 입양 65
 성년후견 88

소극재산 48
 소송구조 124
 손해배상 49
 손해배상청구 46

ㅇ

양육비 80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29
 양육자의 지정 79
 원상회복청구 46
 위자료 46, 49
 유류분 117
 유류분반환청구 118
 유언 108, 109
 유언의 검인 115
 유증 112, 113
 이행명령 30
 이행확보 제도 26
 이혼의 무효 53
 이혼의 취소 54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60
 인지의 무효 59
 인지의 취소 60
 인지의 허가 63
 인척 34
 일상가사대리권 38
 일시금 지급 명령 122
 임의인지 57



임의후견 91
 입양의 무효 71
 입양의 취소 72
 입양특례법상 입양 70

ㄷ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09
 재산명시 120
 재산분할청구 43
 재산조회 120
 재판상 이혼 41
 재판상 인지 58
 재판상 파양 75
 적극재산 48
 절차구조 124
 조정 전치주의 2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4
 직계비속 36
 직계존속 36
 직계혈족 34

ㄸ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 78
 친권의 상실 83
 친권의 일부 제한 84
 친권의 일시 정지 83

친권자 87
 친생부인의 소 61
 친생부인의 허가 63
 친생자 86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64
 친양자 입양 68
 친양자 입양의 취소 76
 친양자 파양 76
 친족 32

ㅌ

특별수익 102
 특정유증 115
 특정후견 90

ㅍ

포괄유증 114
 피상속인 96

ㅎ

한정승인 106
 한정후견 89
 혈족 33
 협의상 파양 74

협의이혼 39
 혼인 37
 혼인의 무효 50
 혼인의 취소 51
 후견감독인 93
 후견인 변경 92
 후견인 사임 92

책임연구원 이소현
공동연구원 정희찬, 이종준, 김정희, 황서립
연구보조원 이한솔, 방혜숙
모 델 박찬헌, 김리후
촬영·편집 윤요섭
감수위원 전해영, 조희경, 현영옥
감 수 정승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미주(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형관(인천지방법원 판사)
박가람(대구지방법원 판사)
여인지(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정주희(대구지방법원 판사)

가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인 쇄 일 2022년 12월
발 행 일 2022년 12월
연 구 기 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34, 1103호
발 행 처 법원행정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19(서초동)
전 화 02-3480-6058
디자인·인쇄 (주)파스텔북 070-8181-2891